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 9.

대한민국정부

목 차

I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	1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1
2. 조세지출의 정의	1
3. 조세지출의 범위	2
4. 조세지출의 유형	3
<참고>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4
II . 연도별 조세지출 개요	6
1.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6
2. 2025년 조세지출 실적	7
3. 2026년 조세지출 전망	9
4. 2027년 조세지출 전망	11
III . 연도별 조세지출 분석	13
1. 분야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13
<참고> 16대 분야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15
2.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17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19
4. 조세특례제한법 분류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21
5.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24
6. 주요 조세지출 현황	25
7.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27
<참고> 조세지출 분류 개선 방안	31
IV . 2026년 조세지출 정비 현황	33
1. 2026년 조세지출 제도 정비	33
<참고> 2026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내용 및 사유	40
2.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조정	41

목 차

V.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44
1.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44
(1) 중소기업	44
(2) 연구개발	46
(3) 국제자본거래	54
(4) 투자촉진	55
(5) 고용지원	58
(6) 기업구조조정	61
(7) 금융기관구조조정	68
(8) 지역균형발전	68
(9) 공익사업지원	77
(10) 저축지원	81
(11) 국민생활안정	90
(12) 근로 및 자녀장려	96
(13) 기타직접국세	98
(14) 간접국세	106
(15) 외국인투자	123
(16) 제주국제도시육성	123
(17) 기업도시	125
(18) 지역발전	125
(19) 농협구조개편	127
(20) 공적자금 회수	127
(21) 수협구조개편	128
(22) 사업재편 계획	128
(23) 기회발전특구 지원	131
(24) 통합특별시 지원	132
(25) 기타	132
2.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137
3. 경과규정 항목별 세부내역	157

I.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 정부가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 연도)의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 예산서를 함께 제출하여 조세지출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및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2. 조세지출의 정의

-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 OECD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

* 세율구조, 과세대상, 회계관행, 행정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OECD, '96)

※ ① 개별세법상 과세기본구조(기본원칙, 과세대상, 세율구조 등), ② 과세기본 구조 보정항목(과세단위·대상 등을 보정), ③ 공적지출(정부구매·지출, 국방, 치안, 외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조세체계에 해당(조세연, '20)

-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로 특정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생기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함
-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국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의 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음

3. 조세지출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세지출에 해당
 - 중과세, 납세자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동업기업 과세특례), 세입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등은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어 제외
 - 또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대상에서 제외
 - 조세지출이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하므로 조세 감면의 수혜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조세지출에서 제외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 가능성 등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취지·필요적 경비여부 등을 감안하여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

< 조세지출의 특성 >

구 분	내 용
특정성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에 혜택을 제공하여야 함
대체가능성	조세지출은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는 상관없는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입증 가능하여야 함
폐지가능성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여야 함
기타	기준조세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세목 내에서의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등)로서 규모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조세지출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항목이 동일 조세제도 내에 없어야 함

※ 출처 : OECD,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96)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폐지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로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

4. 조세지출의 유형

□ 조세지출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 가능

□ 직접감면의 종류

- (비과세)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 (저율과세) 일반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 (기타감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등 다른 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는 감면

□ 간접감면의 종류

- (준비금)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기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 (과세이연)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

① 조세지출예산서의 연혁

-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도입
 -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직전연도 및 해당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전망 금액을 조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하여 공표
- 2010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 차이 >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운용기간	1999 ~ 2009년	2010년 이후
의무제출 여부	임의제출	의무제출 (예산안 첨부서류)
분류기준	지원 분야별	기능별 (예산분류기준별)
대상기간	2개연도 (직전·해당)	3개연도 (직전·해당·다음)

②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목적

- 조세지출 내역을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공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 조세지출의 항목별로 예산 분류기준(분야-부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 운용 가능

③ 조세지출의 규모 산정 방법

- 조세지출 규모는 조세지출예산서가 제출되는 ①직전연도의 실적금액(신고기준), ②해당연도 전망금액 및 ③다음연도의 전망금액으로 구분하여 산출

① (직전연도 조세지출의 규모) 국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조세감면 신고금액을 집계하여 작성

-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 간접감면의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조세지출 금액을 추정
- 소득세 비과세·부가가치세 면제 등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련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감면금액을 추정
- 국세청 및 행정기관의 자료 수집 한계 등으로 합리적 추정이 어려운 항목은 '추정곤란'으로 표시

② (해당연도 조세지출의 규모) 해당연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과 이전 연도의 진도비*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진도비 : 상반기 감면액 / 연간 감면액 (연도별, 항목별)

③ (다음연도 조세지출의 규모) 해당연도 조세감면 추정금액에 경제성장률(경상GDP)·설비투자증가율 등 경제지표*, 세목별 탄성치 등을 고려하여 추정

* ('27년도 예산서 활용 경제지표) '26년 연간 경제전망 지표('26년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26.1분기 국민계정 실적(한국은행) 등

II. 연도별 조세지출 개요

1.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 (국세감면액) '25년 실적은 76.1조원으로 '24년 70.5조원 대비 5.6조원 증가하였으며, '26년과 '27년은 전년 대비 각각 10.9조원, 17.9조원 증가한 87.0조원 및 104.9조원으로 전망

* 국세감면액 추이(조원): ('23) 69.8, ('24) 70.5, ('25) 76.1, ('26^e) 87.0 ('27^e) 104.9

- (국세감면율) '25년 실적은 15.9%로 '24년 16.1% 대비 0.2%p 하락하였고 '26년 및 '27년은 각각 16.3%, 14.5%로 전망

* 국세감면율 추이(%): ('23) 15.8, ('24) 16.1, ('25) 15.9, ('26^e) 16.3 ('27^e) 14.5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수입 총액*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국세수납액: 정부 작성 결산 기준 / 결산 작성 전 회계연도의 경우 국세 세입예산액)

-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국가재정법 제88조)

<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25~2027) >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 국세감면액 (A)	761,084	100.0	870,132	100.0	1,049,307	100.0
• 조특법상 조세지출	397,258	52.2	477,936	54.9	632,489	60.3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359,776	47.3	388,821	44.7	414,735	39.5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4,050	0.5	3,376	0.4	2,083	0.2
○ 국세수입총액(B)	4,021,024		4,447,507		6,153,088	
○ 국세감면율 [A/(A+B)]	15.9		16.3		14.5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5.5		16.4		16.6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 2025년 조세지출 실적

□ '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 1,084억원으로 '24년 국세감면액 70조 5,171억원 대비 55,913억원 증가

○ '25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24년 16.1% 대비 0.2%p 감소

< 2025년 국세감면액 증감 >

(단위: 억원, %, %p)

구 분	2024년(실적)	2025년(실적)	증감
○ 국세감면액 (A)	705,171	761,084	55,913
○ 국세수입총액 (B)	3,656,829	4,021,024	364,195
○ 국세감면율 [A/(A+B)]	16.1	15.9	△0.2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6	15.5	0.9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2조원), 통합투자세액공제(+0.7조원) 등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5.6조원)하였으나 국세수입총액도 증가(+36.4조원)하여 국세감면율은 하락

< 2025년 주요 조세지출 증감 항목 >

(단위: 억원, %)

항목		2024년 (실적)	2025년 (실적)	증 감	
				증감액	증감율
증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9,574	41,476	11,902	40.2
	통합투자세액공제	17,694	24,887	7,193	40.7
감 소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10,359	9,110	△1,249	△12.1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9,091	7,996	△1,095	△12.0

< 2025년 주요 증감 항목 >

□ 전년 대비 증가 항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1,902억원 증가

- ('24년 실적) 29,574억원 → ('25년 실적) 41,476억원

* '23년 기업실적 악화로 '24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실적이 감소했으나,
'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25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예년 수준 회복

○ 통합투자세액공제 : 7,193억원 증가

- ('24년 실적) 17,694억원 → ('25년 실적) 24,887억원

* '23년 기업실적 악화로 '24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실적이 감소했으나,
'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25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예년 수준 회복

□ 전년 대비 감소 항목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1,249억원 감소

- ('24년 실적) 10,359억원 → ('25년 실적) 9,110억원

*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

○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095억원 감소

- ('24년 실적) 9,091억원 → ('25년 실적) 7,996억원

*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

3. 2026년 조세지출 전망

□ '26년 국세감면액은 87조 132억원으로 '25년 국세감면액 76조 1,084억원 대비 10조 9,048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6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25년 15.9% 대비 0.4%p 상승 전망

< 2026년 국세감면액 증감 전망 >

(단위: 억원, %, %p)

구 분	2025년(실적)	2026년(전망)	증 감
○ 국세감면액 (A)	761,084	870,132	109,048
○ 국세수입총액* (B)	4,021,024	4,447,507	426,483
○ 국세감면율 [A/(A+B)]	15.9	16.3	0.4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5.5	16.4	0.9

* 세입예산액(2026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기준

□ 통합투자세액공제(+3.5조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8조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0.8조원) 등으로 국세감면액 증가

< 2026년 주요 조세지출 증감 항목 >

(단위: 억원, %)

항목		2025년 (실적)	2026년 (전망)	증 감	
				증감액	증감율
증 가	통합투자세액공제	24,887	60,116	35,229	141.6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1,476	69,385	27,909	67.3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72,530	80,170	7,640	10.5

〈 2026년 주요 증감 항목 〉

□ 전년 대비 증가 항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 35,229억원 증가

- ('25년 실적) 24,887억원 → ('26년 전망) 60,116억원

* 반도체 분야 공제율 상향 및 '25년 기업실적 증가에 따라 공제여력이 확대되어 세액공제 금액 증가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7,909억원 증가

- ('25년 실적) 41,476억원 → ('26년 전망) 69,385억원

* '25년 기업실적 증가에 따라 공제여력이 확대되어 세액공제 금액 증가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7,640억원 증가

- ('25년 실적) 72,530억원 → ('26년 전망) 80,170억원

* 공제대상 근로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공제금액 증가

4. 2027년 조세지출 전망

□ '27년 국세감면액은 104조 9,307억원으로 '26년 국세감면액 87조 132억원 대비 17조 9,17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7년 국세감면율은 14.5%로 '26년 16.3% 대비 1.8%p 하락 전망

< 2027년 국세감면액 증감 전망 >

(단위: 억원, %, %p)

구 분	2026년(전망)	2027년(전망)	증 감
○ 국세감면액 (A)	870,132	1,049,307	179,175
○ 국세수입총액* (B)	4,447,507	6,153,088	1,705,581
○ 국세감면율 [A/(A+B)]	16.3	14.5	△1.8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6.4	16.6	0.2

* 세입예산액(2026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기준

□ 통합투자세액공제(+10.5조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6조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0.7조원) 등으로 국세감면액 증가

< 2027년 주요 조세지출 증가 항목 >

(단위: 억원, %)

항목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증 감	
				증감액	증감율
증가	통합투자세액공제	60,116	165,583	105,467	175.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9,385	105,114	35,729	5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1,360	48,292	6,932	16.8

〈 2027년 주요 증감 항목 〉

□ 전년 대비 증가 항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 105,467억원 증가

- ('26년 전망) 60,116억원 → ('27년 전망) 165,583억원

*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 및 투자 확대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35,729억원 증가

- ('26년 전망) 69,385억원 → ('27년 전망) 105,114억원

*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 및 연구인력개발 지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6,932억원 증가

- ('26년 전망) 41,360억원 → ('27년 전망) 48,292억원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Ⅲ. 연도별 조세지출 분석

1. 분야별(12대분야)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해 '24.9월 이후 조세지출 분류체계를 예산안·중기재정운용계획의 12대 분야로 변경

□ ('26년 전망) '25년 대비 4대 분야(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조세지출은 12조 4,638억원 증가

○ 농림·수산·식품은 감소(△2,725억원)하나, 보건·복지·고용(+29,572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69,951억원), R&D(+27,840억원)은 증가

□ ('27년 전망) '26년 대비 4대 분야(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조세지출은 21조 68억원 증가

○ 보건·복지·고용(+26,249억원), 농림·수산·식품(+1,454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6,629억원), R&D(+35,736억원) 모두 증가

< 분야별 조세지출 현황 >

(단위: 억원)

12대 분야 분류기준		2025년(실적)	2026년(전망)	2027년(전망)
1	일반·지방행정	100,327	103,688	112,840
2	공공질서·안전	0	0	0
3	외교·통일	11	10	10
4	국방	188	173	176
5	교육	10,160	10,605	12,355
6	문화·체육·관광	3,610	4,278	3,383
7	환경	24,513	31,866	29,357
8	보건·복지·고용	386,227	415,799	442,048
9	농림·수산·식품	58,306	55,581	57,035
10	SOC	11,428	11,932	9,269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6,159	236,110	382,739
12	R&D*	41,670	69,510	105,246

*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여타 분야 중 R&D 관련 조세지출항목을 중복계상

① (보건·복지·고용) 국세감면액 지속 증가

※ '25년(실적) 38조 6,227억원 → '26년(전망) 41조 5,799억원
→ '27년(전망) 44조 2,048억원

- ('26년 증가항목)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640억원), 연금계좌세액공제(+5,097억원), 자녀세액공제(+4,816억원)
- ('27년 증가항목)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421억원), 연금보험료공제(+4,754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2,872억원)

② (농림·수산·식품) 국세감면액 감소 후 증가

※ '25년(실적) 5조 8,306억원 → '26년(전망) 5조 5,581억원
→ '27년(전망) 5조 7,035억원

- ('26년 감소항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348억원),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1,310억원)
- ('27년 증가항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738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28억원)

③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세감면액 지속 증가

※ '25년(실적) 16조 6,159억원 → '26년(전망) 23조 6,110억원
→ '27년(전망) 38조 2,739억원

- ('26년 증가항목) 통합투자세액공제(+35,229억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7,909억원)
- ('27년 증가항목) 통합투자세액공제(+105,467억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5,729억원)

④ (R&D) 국세감면액 지속 증가

※ '25년(실적) 4조 1,670억원 → '26년(전망) 6조 9,510억원
→ '27년(전망) 10조 5,246억원

- ('26년 증가항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7,909억원)
- ('27년 증가항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5,729억원)

< 16대 분야 분류 조세지출 현황 >

(단위: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25년		2026년		2027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일반·지방행정	100,327	13.2	103,688	11.9	112,840	10.8
2 공공질서 및 안전	0	0.0	0	0.0	0	0.0
3 통일·외교	11	0.0	10	0.0	10	0.0
4 국방	188	0.0	173	0.0	176	0.0
5 교육	10,160	1.3	10,605	1.2	12,355	1.2
6 문화 및 관광	3,610	0.5	4,278	0.5	3,383	0.3
7 환경	24,513	3.2	31,866	3.7	29,357	2.8
8 사회복지	264,195	34.7	284,011	32.6	298,983	28.5
9 보건	122,032	16.0	131,789	15.1	143,065	13.6
10 농림수산	58,306	7.7	55,581	6.4	57,035	5.4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6,159	21.8	236,110	27.1	382,739	36.5
12 교통 및 물류	8,057	1.1	7,393	0.8	4,435	0.4
13 통신	0	0.0	0	0.0	0	0.0
14 국토 및 지역개발	3,370	0.4	4,539	0.5	4,834	0.5
15 과학기술	157	0.0	89	0.0	94	0.0
16 예비비	0	0.0	0	0.0	0	0.0
합 계	761,084	100.0	870,132	100.0	1,049,307	100.0

* 세출예산분류항목 중 2.공공질서 및 안전, 13.통신, 16.예비비는 해당 국세감면 항목이 없음

□ ('26년 전망) 4대 분야* 조세지출 비중은 81.3%로 '25년 80.2% 대비 1.1%p 증가

*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25년 대비 산업·중소기업·에너지(+5.3%p)는 크게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2.1%p), 보건(△0.9%p), 농림수산(△1.3%p)은 감소

□ ('27년 전망) 4대 분야 조세지출 비중은 84.0%로 '26년 81.3% 대비 2.7%p 증가

○ '26년 대비 산업·중소기업·에너지(+9.3%p)는 크게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4.1%p), 보건(△1.5%p), 농림수산(△1.0%p)은 감소

① (사회복지) 국세감면액 지속 증가,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26조 4,195억원(비중 34.7%) → '26년(전망) 28조 4,011억원(32.6%)
→ '27년(전망) 29조 8,983억원(28.5%)

- ('26년 증가항목) 연금계좌세액공제(+5,097억원),
자녀세액공제(+4,816억원), 연금보험료공제(+4,164억원)
- ('27년 증가항목) 연금보험료공제(+4,754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2,872억원), 연금계좌세액공제(+2,259억원)

② (보건) 국세감면액 지속 증가,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12조 2,032억원(비중 16.0%) → '26년(전망) 13조 1,789억원(15.1%)
→ '27년(전망) 14조 3,065억원(13.6%)

- ('26년 증가항목)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640억원),
의료비 특별세액공제(+1,654억원)
- ('27년 증가항목)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421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2,220억원)

③ (농림수산) 국세감면액 감소 후 증가,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5조 8,306억원(비중 7.7%) → '26년(전망) 5조 5,581억원(6.4%)
→ '27년(전망) 5조 7,035억원(5.4%)

- ('26년 감소항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348억원),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1,310억원)
- ('27년 증가항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738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28억원)

④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세감면액·비중 모두 지속 증가

※ '25년(실적) 16조 6,159억원(비중 21.8%) → '26년(전망) 23조 6,110억원(27.1%)
→ '27년(전망) 38조 2,739억원(36.5%)

- ('26년 증가항목) 통합투자세액공제(+35,229억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7,909억원)
- ('27년 증가항목) 통합투자세액공제(+105,467억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5,729억원)

2.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 ('26년 전망)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3.7%로 '25년 93.4% 대비 0.3%p 증가
 - '25년 대비 법인세 비중(+5.4%p) 증가, 소득세 비중(△4.1%p) 및 부가가치세 비중(△1.1%p) 감소
- ('27년 전망)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4.7%로 '26년 93.7% 대비 1.0%p 증가
 - '26년 대비 법인세 비중(+10.0%p) 증가, 소득세 비중(△5.8%p) 및 부가가치세 비중(△3.2%p) 감소

<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5		2026		2027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직접국세	607,844	79.9	699,133	80.3	886,127	84.4
소득세	462,579	60.8	493,602	56.7	534,616	50.9
법인세	120,525	15.8	184,742	21.2	327,776	31.2
상속·증여세	24,741	3.3	20,788	2.4	23,736	2.3
간접국세	151,965	20.0	169,203	19.4	161,588	15.4
부가가치세	128,066	16.8	136,843	15.7	131,261	12.5
교통·에너지·환경세	6,270	0.8	7,225	0.8	7,053	0.7
개별소비세	10,585	1.4	11,815	1.4	10,799	1.0
주세	865	0.1	879	0.1	893	0.1
인지세	819	0.1	854	0.1	392	0.0
증권거래세	1,283	0.2	7,061	0.8	7,176	0.7
교육세	4,076	0.5	4,526	0.5	4,016	0.4
관 세	1,276	0.2	1,796	0.2	1,591	0.2
합 계	761,084	100.0	870,132	100.0	1,049,307	100.0

① (소득세) 감면액은 지속 증가,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46조 2,579억원(비중 60.8%) → '26년(전망) 49조 3,602억원(56.7%)
→ '27년(전망) 53조 4,616억원(50.9%)

- ('26년 증가항목)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640억원), 연금계좌세액공제(+5,097억원)
- ('27년 증가항목)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42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6,932억원)

②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 모두 지속 증가

※ '25년(실적) 12조 525억원(비중 15.8%) → '26년(전망) 18조 4,742억원(21.2%)
→ '27년(전망) 32조 7,776억원(31.2%)

- ('26년 증가항목) 통합투자세액공제(+35,229억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7,909억원)
- ('27년 증가항목) 통합투자세액공제(+105,467억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5,729억원)

③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증가 후 감소,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12조 8,066억원(비중 16.8%) → '26년(전망) 13조 6,843억원(15.7%)
→ '27년(전망) 13조 1,261억원(12.5%)

- ('26년 증가항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3,855억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3,102억원)
- ('27년 감소항목)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2,088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302억원)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 ('26년 전망)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64.2%로 '25년 61.6% 대비 2.6%p 증가
 - '25년 대비 세액공제 비중(5.8%p) 증가, 세액감면 비중($\Delta 0.7\%$ p)과 소득공제 비중($\Delta 2.6\%$ p) 감소
- ('27년 전망)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70.5%로 '26년 64.2% 대비 6.3%p 증가
 - '26년 대비 세액공제 비중(8.9%p) 증가, 세액감면 비중($\Delta 0.7\%$ p)과 소득공제 비중($\Delta 1.9\%$ p) 감소

<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A. 직접감면	759,976	99.9	869,299	99.9	1,048,602	99.9
1.비과세	60,278	7.9	61,251	7.0	62,847	6.0
2.세액감면	59,558	7.8	62,058	7.1	67,206	6.4
2-1.소득·법인세 감면	48,130	6.3	49,723	5.7	53,759	5.1
2-2.양도·증여세 감면	11,427	1.5	12,335	1.4	13,447	1.3
3.세액공제	211,232	27.8	292,285	33.6	445,762	42.5
4.소득공제	198,262	26.0	203,870	23.4	226,326	21.6
5.저울과세	12,121	1.6	13,993	1.6	18,497	1.8
6.기타감면	218,525	28.7	235,842	27.1	227,965	21.7
6-1.근로·자녀장려세제	55,284	7.3	53,812	6.2	53,896	5.1
6-2.부가가치세 영세율	27,958	3.7	26,675	3.1	24,928	2.4
6-3.부가가치세 면제	11,513	1.5	13,768	1.6	10,397	1.0
6-4.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20,887	2.7	23,526	2.7	21,825	2.1
6-5.주세·증권거래세 면제	3,011	0.4	8,835	1.0	8,502	0.8
6-6.기타(매입세액공제 등)	98,596	13.0	107,431	12.3	106,825	10.2
6-7.관세 감면	1,276	0.2	1,796	0.2	1,591	0.2
B.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1,109	0.1	834	0.1	705	0.1
합 계	761,084	100.0	870,132	100.0	1,049,307	100.0

① (세액감면) 감면액은 지속 증가,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5조 9,558억원(비중 7.8%) → '26년(전망) 6조 2,058억원(7.1%)
→ '27년(전망) 6조 7,206억원(6.4%)

- ('26년 증가항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281억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232억원)
- ('27년 증가항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942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505억원),

② (세액공제) 감면액과 비중 모두 지속 증가

※ '25년(실적) 21조 1,232억원(비중 27.8%) → '26년(전망) 29조 2,285억원(33.6%)
→ '27년(전망) 44조 5,762억원(42.5%)

- ('26년 증가항목) 통합투자세액공제(+35,229억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7,909억원)
- ('27년 증가항목) 통합투자세액공제(+105,467억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5,729억원)

③ (소득공제) 감면액은 지속 증가,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19조 8,262억원(비중 26.0%) → '26년(전망) 20조 3,870억원(23.4%)
→ '27년(전망) 22조 6,326억원(21.6%)

- ('26년 증가항목) 보험료 특별소득공제(+6,919억원), 연금보험료 공제(+4,164억원)
- ('27년 증가항목) 보험료 특별소득공제(+5,94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4,754억원)

④ (기타감면) 감면액은 증가 후 감소,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21조 8,525억원(비중 28.7%) → '26년(전망) 23조 5,842억원(27.1%)
→ '27년(전망) 22조 7,965억원(21.7%)

- ('26년 증가항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4,035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3,855억원)
- ('27년 감소항목)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2,088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302억원)

4. 조세특례제한법 분류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 ('26년 전망) 연구개발, 투자촉진,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가 감면 총액의 71.4%로 '25년 68.3% 대비 +3.1%p 증가
- '25년 대비 연구개발(+2.4%p), 투자촉진(+3.6%p), 국민생활안정(△1.4%p), 근로·자녀장려(△1.1%p), 간접국세(△0.5%p) 비중 증감
- ('27년 전망) 연구개발, 투자촉진,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가 감면 총액의 74.2%로 '26년 71.4% 대비 +2.8%p 증가
- '26년 대비 연구개발(+2.0%p), 투자촉진(+8.9%p), 국민생활안정(△3.2%p), 근로·자녀장려(△1.0%p), 간접국세(△3.9%p) 비중 증감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

(단위: 억원, %)

분 야		2025년		2026년		2027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중소기업	39,482	5.2	37,836	4.3	40,146	3.8
2	연구개발	48,814	6.4	76,790	8.8	113,178	10.8
3	국제자본거래	24	0.0	1	0.0	1	0.0
4	투자촉진	25,584	3.4	60,838	7.0	166,580	15.9
5	고용지원	55,042	7.2	58,110	6.7	62,947	6.0
6	기업구조조정	5,365	0.7	6,550	0.8	7,009	0.7
7	금융기관구조조정	0	0.0	0	0.0	0	0.0
8	지역균형발전	12,578	1.7	13,156	1.5	14,488	1.4
9	공익사업지원	6,761	0.9	7,777	0.9	7,761	0.7
10	저축지원	30,849	4.1	32,610	3.7	35,997	3.4
11	국민생활안정	247,159	32.5	270,299	31.1	293,103	27.9
12	근로·자녀장려	55,284	7.3	53,812	6.2	53,896	5.1
13	기타직접국세	39,894	5.2	42,173	4.8	44,356	4.2
14	간접국세	142,985	18.8	159,112	18.3	151,546	14.4
15	외국인투자	532	0.1	331	0.0	346	0.0
16	제주국제도시육성	1,545	0.2	2,531	0.3	2,602	0.2
17	기업도시	57	0.0	19	0.0	20	0.0
18	지역발전	4	0.0	3	0.0	3	0.0
19	농협구조개편	798	0.1	837	0.1	815	0.1
20	공적자금 회수	0	0.0	0	0.0	0	0.0
21	수협구조개편	82	0.0	102	0.0	85	0.0
22	사업재편 계획	0	0.0	0	0.0	0	0.0
23	기회발전특구 지원	0	0.0	0	0.0	0	0.0
24	기타	48,246	6.3	47,245	5.4	54,426	5.2
합 계		761,084	100.0	870,132	100.0	1,049,307	100.0

① (중소기업) 감면액은 감소 후 증가,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3조 9,482억원(비중 5.2%) → '26년(전망) 3조 7,836억원(4.3%)
→ '27년(전망) 4조 146억원(3.8%)

- ('26년 감소항목) 가업상속공제(△2,368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29억원)
- ('27년 증가항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505억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21억원)

② (연구개발) 감면액 및 비중 지속 증가

※ '25년(실적) 4조 8,814억원(비중 6.4%) → '26년(전망) 7조 6,790억원(8.8%)
→ '27년(전망) 11조 3,178억원(10.8%)

- ('26년 증가항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7,909억원)
- ('27년 증가항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5,729억원)

③ (투자촉진) 감면액과 비중 모두 지속 증가

※ '25년(실적) 2조 5,584억원(비중 3.4%) → '26년(전망) 6조 838억원(7.0%)
→ '27년(전망) 16조 6,580억원(15.9%)

- ('26년 증가항목) 통합투자세액공제(+35,229억원)
- ('27년 증가항목) 통합투자세액공제(+105,467억원)

④ (고용지원) 감면액 지속 증가,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5조 5,042억원(비중 7.2%) → '26년(전망) 5조 8,110억원(6.7%)
→ '27년(전망) 6조 2,947억원(6.0%)

- ('26년 증가항목) 통합고용세액공제(+2,507억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689억원)
- ('27년 증가항목) 통합고용세액공제(+2,872억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942억원)

⑤ (국민생활안정) 감면액은 지속 증가,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24조 7,159억원(비중 32.5%) → '26년(전망) 27조 299억원 (31.1%)
→ '27년(전망) 29조 3,103억원(27.9%)

- ('26년 증가항목)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640억원), 연금계좌세액공제(+5,097억원)
- ('27년 증가항목)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421억원), 연금보험료공제(+4,754억원)

⑥ (근로·자녀장려) 감면액 감소 후 증가,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5조 5,284억원(비중 7.3%) → '26년(전망) 5조 3,812억원(6.2%)
→ '27년(전망) 5조 3,896억원(5.1%)

- ('26년 감소항목) 근로장려금(△897억원), 자녀장려금(△575억원)
- ('27년 증가항목) 근로장려금(+572억원)

⑦ (간접국세) 감면액 증가 후 감소, 비중은 지속 감소

※ '25년(실적) 14조 2,985억원(비중 18.8%) → '26년(전망) 15조 9,112억원(18.3%)
→ '27년(전망) 15조 1,546억원(14.4%)

- ('26년 증가항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4,035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3,855억원)
- ('27년 감소항목)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2,088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302억원)

5.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개인	① 중·저소득자	336,449	69.0	346,740	67.6	368,582	66.9
	② 고소득자	151,136	31.0	166,014	32.4	182,372	33.1
	계 (총계 대비)	487,585	100.0 (64.1)	512,754	100.0 (58.9)	550,954	100.0 (52.5)
(2) 기업	① 중소기업	188,301	70.4	203,421	58.1	207,745	42.2
	② 중견기업	11,010	4.1	11,213	3.2	12,228	2.5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42,685	16.0	107,762	30.8	245,871	49.9
	④ 기타기업	25,616	9.6	28,003	8.0	26,397	5.4
	계 (총계 대비)	267,612	100.0 (35.2)	350,399	100.0 (40.3)	492,241	100.0 (46.9)
(3) 구분곤란		5,887		6,979		6,112	
총 계		761,084		870,132		1,049,307	

< 수혜자 구분기준 >

(1) **개인** – 근로소득자*,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조세지출 항목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자 포함

① 중·저소득자 : 근로소득이 **8,9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근로자 및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② 고소득자 : 중·저소득자를 제외한 개인

(2) **기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①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④ 기타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기업

(3) **구분곤란** – 비거주자 수혜 대상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6. 주요 조세지출 현황

□ 감면액 기준 연도별 상위 20개 항목

< 주요 조세지출 현황 >

(단위: 억원, %)

	2025년 (실적)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72,530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80,170	통합투자세액공제	165,583
2	연금보험료공제	47,58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69,38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5,114
3	근로장려금	46,367	통합투자세액공제	60,116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87,591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3,243	연금보험료공제	51,745	연금보험료공제	56,499
5	통합고용세액공제	43,035	통합고용세액공제	45,542	통합고용세액공제	48,414
6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1,476	근로장려금	45,47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8,292
7	면세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35,87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1,360	근로장려금	46,042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33,654	면세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37,209	면세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38,544
9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1,08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4,93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36,322
10	통합투자세액공제	24,88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34,10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2,633
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23,404	연금계좌세액공제	25,751	연금계좌세액공제	28,010
1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1,91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2,87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4,380
13	연금계좌세액공제	20,654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1,305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1,873
14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8,20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0,56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1,304
15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5,72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7,375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8,999
1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14,362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15,551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17,016
17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4,074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4,926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6,309
1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1,608	자녀세액공제	13,43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4,239
19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0,25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2,297	자녀세액공제	11,965
20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9,368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1,433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1,668
	합계 (전체조세지출 대비, %)	579,295 (76.1%)	합계 (전체조세지출 대비, %)	675,549 (77.6%)	합계 (전체조세지출 대비, %)	850,799 (81.1%)

□ 2025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항목	개인		법인				구분 곤란	합계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중소	중견	상출	기타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39,688 (54.7)	32,842 (45.3)	- -	- -	- -	- -	- -	72,530
2	연금보험료공제	30,649 (64.4)	16,931 (35.6)	- -	- -	- -	- -	- -	47,581
3	근로장려금	46,367 (100)	0 (0)	- -	- -	- -	- -	- -	46,367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3,419 (77.3)	9,824 (22.7)	- -	- -	- -	- -	- -	43,243
5	통합고용세액공제	- -	- -	38,680 (89.9)	2,757 (6.4)	649 (1.5)	949 (2.2)	- -	43,035
6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 -	14,941 (36)	2,966 (7.2)	21,515 (51.9)	2,054 (5)	- -	41,476
7	면세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 -	- -	31,263 (87.1)	898 (2.5)	1,797 (5)	1,917 (5.3)	- -	35,874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5,781 (46.9)	17,873 (53.1)	- -	- -	- -	- -	- -	33,654
9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 -	31,080 (100)	0 (0)	0 (0)	0 (0)	- -	31,080
10	통합투자세액공제	- -	- -	5,696 (22.9)	2,379 (9.6)	13,727 (55.2)	3,085 (12.4)	- -	24,887
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 -	23,404 (100)	0 (0)	0 (0)	0 (0)	- -	23,404
1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1,914 (100)	0 (0)	- -	- -	- -	- -	- -	21,914
13	연금계좌세액공제	10,439 (50.5)	10,215 (49.5)	- -	- -	- -	- -	- -	20,654
1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	- -	14,912 (81.9)	584 (3.2)	687 (3.8)	2,019 (11.1)	- -	18,203
15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1,024 (70.1)	4,697 (29.9)	- -	- -	- -	- -	- -	15,721
1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9,978 (69.5)	4,384 (30.5)	- -	- -	- -	- -	- -	14,362
17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7,311 (51.9)	6,763 (48.1)	- -	- -	- -	- -	- -	14,074
1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1,466 (98.8)	142 (1.2)	- -	- -	- -	- -	- -	11,608
19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0,259 (100)	0 (0)	- -	- -	- -	- -	- -	10,259
20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5,118 (54.6)	4,250 (45.4)	- -	- -	- -	- -	- -	9,368
	합계 (비중, %)	253,413 (70.1)	107,923 (29.9)	159,975 (73.4)	9,585 (4.4)	38,375 (17.6)	10,024 (4.6)	0	579,295 (76.1)

7.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 조세지출 정비 및 항목별 분류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관리대상 유형별 정보를 제공

□ 조세지출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에 기초한 관리 가능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각 조세지출 항목을 조세지출 특성의 보유 정도에 따라 관리 가능 범주를 분류
- 해당 범주의 감면규모 및 변화 추이에 관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지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세지출 정비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의 조세지출 특성 보유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수준의 관리가능성으로 분류

-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특성을 모두 갖춘 항목
- (잠재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특성을 일부 갖춘 항목
- (구조적 지출)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어 정비가 곤란한 항목

<조세지출 항목의 유형별 구분기준>

낮음 ← 관리 가능성 → 높음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
×	×	×	×	○	×	○	○	○
			○	×				
※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항목 → 정비가 사실상 곤란			※ 폐지가능성이 거의 없고, 특정성·대체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			※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		

□ ('26년 전망) 구조적지출, 잠재적·적극적 관리대상의 비중은 22.1%, 26.7%, 50.7%로 '25년 대비 각각 △0.8%p, △2.5%p, +3.3%p 증감

○ 관리대상 감면율 기준으로 잠재적·적극적 감면율은 4.5%, 8.6%로 '25년 대비 각각 △0.3%p, 0.8%p 증감

□ ('27년 전망) 구조적지출, 잠재적·적극적 관리대상의 비중은 19.7%, 23.2%, 56.9%로 '26년 대비 각각 △2.4%p, △3.6%p, +6.2%p 증감

○ 관리대상 감면율 기준으로 잠재적 감면율 및 적극적 감면율은 3.4% 및 8.5%로 '26년 대비 각각 △1.1%p 및 △0.1%p 감소

<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 국세감면액(A)	761,084	100.0	870,132	100.0	1,049,307	100.0
구조적지출	174,465	22.9	192,576	22.1	206,692	19.7
잠재적 관리대상(B)	222,182	29.2	232,656	26.7	243,312	23.2
적극적 관리대상(C)	360,388	47.4	441,525	50.7	597,221	56.9
경과규정	4,050	0.5	3,376	0.4	2,083	0.2
○ 국세수입총액(D)	4,021,024		4,447,507		6,153,088	
○ 국세감면율[A/(A+D)]	15.9		16.3		14.5	
○ 관리대상 감면율 [(B+C)/(B+C+D)]	12.6		13.1		12.0	
잠재적관리대상 감면율 [B/(B+C+D)]	4.8		4.5		3.4	
적극적관리대상 감면율 [C/(B+C+D)]	7.8		8.6		8.5	

< 구조적 지출 항목 명세 >

[8개 항목]

조 항	내 용
소득세법 §12 3(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51①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세법 §51①2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세법 §51①3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세법 §51①6	한부모 추가공제
소득세법 §51의3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59의2	자녀세액공제(출생·입양, 다자녀)
소득세법 §59의4①, §52①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특별소득공제(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 명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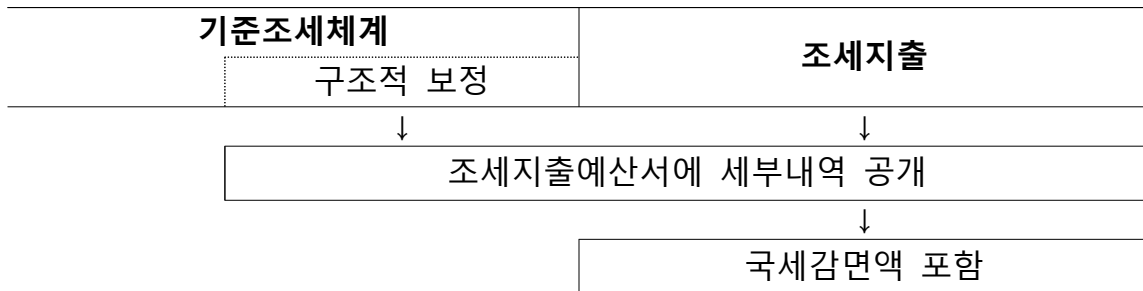
[42개 항목]

조 항	내 용
부가가치세법 §4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소득세법 §59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②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③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④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법인세법 §24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관세법 §91 4,5	장애인용품 등의 관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18①3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 §31, 32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특법 §34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4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8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8의2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8의4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 항	내 용
조특법 §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조특법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44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조특법 §46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5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58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특법 §75	기부장려금
조특법 §76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특법 §100의2~13	근로장려금 지급
조특법 §100의27~31	자녀장려금 지급
조특법 §105①4	장애인용 보장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①5,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의2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105의3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106①12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13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②9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특법 §106의2①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117①7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법 §121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세지출 분류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안)



① (기준조세체계) 과세대상·세율체계 등 모든 납세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중립적·표준적 조세구조(국세감면액에 미포함)

- (구조적 보정) 세법 외 공법상 의무에 따른 지출에 대한 세법상 보정항목 등*으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

* (예)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소득 공제 및 사용자 부담분 비과세 등 →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로 분류

②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 외의 항목(국세감면액에 포함)

□ 추진일정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기준조세체계 기준 수립 및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27.8.)

*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세지출과 기준조세체계 간의 분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 및 조정

○ 개편된 분류체계에 따라 「2028년도 조세지출예산서('27.9.)」 작성

- 다만, 개편 후에도 조세지출 관리의 일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기준조세체계의 재분류되는 항목의 내역 공개

※ (참고) 조세지출에서 구조적 보정(안)* 제외시 조세지출 현황

* 추후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방안」 논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구조적 보정(안) >

조 항	내 용
소득세법 §12 3(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51의3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52①	특별소득공제(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①)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소득세법 §52①)와 달리 보장성 보험 가입 유인을 위한 지원 제도이므로 조세지출로 분류 필요

< 재분류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등 >

(단위: 억원, %)

	2025년	2026년	2027년
■ 현행 국세감면액(A)	761,084	870,132	1,049,307
■ 구조적 보정(B)	138,589	150,119	163,034
■ 재분류 국세감면액(C=A-B)	622,495	720,013	886,273
■ 국세수입총액(D)	4,021,024	4,447,507	6,153,088
■ 재분류 국세감면율[C/(C+D)]	13.4	13.9	12.5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2	14.0	14.1

* 재분류 조세지출 기준 적용시 법정한도

IV. 2026년 조세지출 정비 현황

1. 2026년 조세지출 제도 정비 (2026년 세제개편안)

① 조세지출 제도 정비 현황: 신설 10개, 폐지 27개, 제도 재설계 63개

① 제도 신설(안)

(단위 : 억원)

번호	조 항	내 용	'27년 세수효과
1	조특법 §19의2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136
2	조특법 §29	국내생산세액공제	(‘28년 이후)
3	조특법 §30의8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28년 이후)
4	조특법 §71의3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추정곤란
5	조특법 §91의29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추정곤란
6	조특법 §91의30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추정곤란
7	조특법 §97의11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과세특례	(‘28년 이후)
8	조특법 §97의12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추정곤란
9	조특법 §104의30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28년 이후)
10	조특법 §121의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 과세특례	추정곤란

* 2026년 신설(안) 중 세수효과가 '27년부터 발생하는 항목(예:간접세)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신설항목으로 추가되며, '28년부터 발생하는 항목은 「202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추가됨

② 제도 폐지(안)

(단위 : 억원)

번호	조 항	내 용	조세지출 실적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조특법 §15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0	0	0
2	조특법 §20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0	0	0
3	조특법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6	9	10
4	조특법 §34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5	조특법 §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0	0	0

번호	조 항	내용	조세지출 실적		
			'25실적	'26전망	'27전망
6	조특법 §46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3	13	3
7	조특법 §75	기부장려금	0	0	0
8	조특법 §87③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5	10	11
9	조특법 §92	혼인세액공제	1,218	1,416	1,546
10	조특법 §99의1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11	조특법 §104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0	0	0
12	조특법 §104의22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10	10	11
13	조특법 §104의35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0	0.1	0.1
14	조특법 §105①(3)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3,642	2,610	추정 곤란
15	조특법 §106①(1) 조특법 §111①(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0	19	2
16	조특법 §106①(4의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17	조특법 §106①(9의2)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2,076	2,817	729
18	조특법 §106①(12)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4	4	1
19	조특법 §106의2①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408	453	38
20	조특법 §109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2,814	1,982	500
21	조특법 §111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34	40	4
22	조특법 §116	농수협 조합원 등의 용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87	87	0
23	조특법 §118①(3)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등 관세 감면	0.2	0.1	0
24	조특법 §121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0	0	0
25	개소법 §19의3	주한미군 등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0	0	0
26	관세법 §90①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95	137	0
27	부가법 §26①(10)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 부가가치세 면제	18	0	0

※ 2026년 폐지 제도는 「202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경과규정으로 전환

③ 제도 재설계(안)

(단위 : 억원)

번호	조 항	내용	'27년 세수효과
1	조특법 §6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지역 세분화를 통한 지방 감면을 상향 등	('28년 이후)
2	조특법 §7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	추정곤란
3	조특법 §8의3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자산 무상임대 시 세액공제 등 종료	추정곤란
4	조특법 §10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지역별 차등지원 도입	추정곤란
5	조특법 §12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사후관리 강화,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제도 도입	추정곤란
6	조특법 §13의2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인구감소지역 소재 벤처기업 투자시 세액공제율 상향(5→7%)	추정곤란
7	조특법 §18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적용대상 합리화(첨단기술 연구인력 등에 한정)	추정곤란
8	조특법 §18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단일세율 상향(19→21%)	('28년 이후)
9	조특법 §18의3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연구기관 범위 구체화(첨단기술 한정)	추정곤란
10	조특법 §24	■ 통합투자세액공제 - 지역별 차등지원 도입	추정곤란
11	조특법 §25의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	추정곤란
12	조특법 §25의8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	추정곤란
13	조특법 §28의5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세제지원 -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추가	추정곤란
14	조특법 §29의6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 대상자를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정	('28년 이후)
15	조특법 §29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 - 대기업 지원 폐지, 육휴 복귀자 추가공제 일몰	('28년 이후)

번호	조 항	내용	'27년 세수효과
16	조특법 §30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 우대	추정곤란
17	조특법 §30의6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대상업종 정비,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경영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간 연장 등	추정곤란
18	조특법 §30의7	■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특례 - 대상업종 정비,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경영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간 연장 등	추정곤란
19	조특법 §58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지방 우대	추정곤란
20	조특법 §60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사후관리 강화,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21	조특법 §61	■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사후관리 강화,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22	조특법 §63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세액감면 등 - 사후관리 강화,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23	조특법 §63의2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세액감면 등 - 사후관리 강화,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24	조특법 §64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사후관리 강화,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25	조특법 §67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양도소득 100% 감면을 이월과세방식으로 전환, 과세특례 상시화	추정곤란
26	조특법 §70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일몰 신설	추정곤란
27	조특법 §71의2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광역시 제외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 포함	추정곤란
28	조특법 §85의7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개인 분할납부 특례 일몰종료	추정곤란
29	조특법 §85의8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사후관리 강화,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번호	조 항	내용	'27년 세수효과
30	조특법 §85의9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개인 분할납부 특례 일몰종료	추정곤란
31	조특법 §87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재정전환	9
32	조특법 §87의7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해외부동산 투자 리츠 지원 배제	추정곤란
33	조특법 §96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호수별 차등 폐지 및 감면율 축소	추정곤란
34	조특법 §97의4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비거주자 적용 배제	추정곤란
35	조특법 §97의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장특공제 우대 단계적 축소	추정곤란
36	조특법 §97의10	■ 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감면율 상향(10→15%), 감면한도 적용 등	추정곤란
37	조특법 §99의9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사후관리 강화,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38	조특법 §100의2	■ 근로장려금 - 최대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완화	△1,350
39	조특법 §104의8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고지 세액공제 종료	19
40	조특법 §104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상시근로자수 유지, 감면한도 적용,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41	조특법 §104의30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추정곤란
42	조특법 §106의7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감차 보상 부분 재정전환	65
43	조특법 §109④ 조특법 §109⑦	■ 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 단계적 재정전환	1,112

번호	조 항	내용	'27년 세수효과
44	조특법 §111의2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 - 혼인으로 인한 차별 해소, 차량 소유대수 요건 신설	추정곤란
45	조특법 §116	■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중소기업 면제, 금융기관 50% 감면	△6
46	조특법 §117	■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금융지주회사 면제 폐지	추정곤란
47	조특법 §121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48	조특법 §121의9	■ 제주투자진흥기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49	조특법 §121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50	조특법 §121의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51	조특법 §121의21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52	조특법 §121의22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53	조특법 §121의23 조특법 §121의25	■ 농·수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54
54	조특법 §121의26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확대(석유화학기업 추가)	추정곤란
55	조특법 §121의33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세액감면액 지역환류 의무 도입	추정곤란
56	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대중교통 추가공제분 재정전환 등	('28년 이후)
57	부가법 §46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우대 공제율 조정(1.3→1.2%), 공제한도 조정 등	3,555

번호	조 항	내용	'27년 세수효과
58	소득법 §12 2(가)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 농지법 위반시 임대소득 비과세 제외	추정곤란
59	소득법 §52④, ⑤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 실거주 요건 도입	('28년 이후)
60	소득법 §59의2	■ 자녀세액공제 - 출산·입양분 재정전환	('28년 이후)
61	소득법 §59의4③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 보습학원 제외	추정곤란
62	상증세법 §18의2	■ 가업상속공제 - 대상업종 정비,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경영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간 연장 등	추정곤란
63	상증세법 §52의2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5→10억원)	△14

* 특기사항이 없는 한 2026년 제도 재설계(안)에 따른 세수효과 중 간접세 효과는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반영되며, 직접세 효과는 「202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반영됨 (단순 적용기한의 연장·신설·삭제 조항은 기재 제외)

② 연도별 조세지출 제도 정비내역

(단위 : 개)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안)
신설 (A)	8	10	14	4	4	4	5	9	13*
폐지 (B)	8	4	22	7	9	6	7	7	27
순증 (A-B)	-	6	△8	△3	△5	△2	△2	2	△14

* '26년 상반기 임시국회를 통해 기 개정된 3건(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 과세특례, 환율 변동위험회피상품 과세특례,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포함

□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의 내용과 사유 보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⑥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내용)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4. 법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 2026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용 및 사유

	조세특례 항목	내용	면제 사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지방우대	R&D비용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방을 우대함	지방주도 성장 지원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신속한 대응 필요(조특법§142⑥1)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수도권 대비 상향함	지방주도 성장 지원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신속한 대응 필요(조특법§142⑥1)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재설계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창업도약기업 및 신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하는 규정을 신설함	지방주도 성장 지원 및 잠재성장률 제고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신속한 대응 필요(조특법§142⑥1)

2.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조정

①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현황

<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현황 >

(단위: 개)

구분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추가	제외	항목 수
○ 총 조세지출 항목	278	21	9	290
• 조특법상 조세지출	196	14	6	204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46	1	0	47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36	6	3	39

< 조세지출예산서 일몰 여부 현황(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제외) >

(단위: 개)

구분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운영 중 항목	242	251
• 일몰 항목	(2025년) 72* (2026년 이후) 82	(2026년) 67* (2027년 이후) 95
• 일몰 없는 항목	88	89

* 부분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 포함

②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추가된 항목

① 2025년 신설된 제도('26.4, '26.5. 임시국회 포함)

(단위 : 억원)

번호	조 항	내 용	'27년 세수효과
1	조특법 §25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8
2	조특법 §91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추정곤란
3	조특법 §104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789
4	조특법 §104의36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960
5	조특법 §115의2	저도수 특정 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추정곤란
6	조특법 §91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곤란
7	조특법 §91의27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곤란
8	조특법 §91의28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곤란
9	개소세법 §1㉔(6)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956

② 2026년 신설 예정 제도

(단위 : 억원)

번호	조 항	내 용	'27년 세수효과
1	조특법 §19의2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136
2	조특법 §71의3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추정곤란
3	조특법 §91의29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추정곤란
4	조특법 §91의30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추정곤란
5	조특법 §97의12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추정곤란
6	조특법 §121의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 과세특례	추정곤란

③ 운영 중 항목에서 경과규정으로 전환된 항목

(단위 : 억원)

번호	조 항	내 용	조세지출 실적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조특법 §28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2	조특법 §91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	8	9
3	조특법 §91의22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4	조특법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0	7	7
5	조특법 §107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1,752	1,324	0
6	조특법 §109의2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194	0	0

* 2025년 폐지 제도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경과규정으로 전환

④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된 항목

번호	조 항	내 용	비 고
1	조특법 §28의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7년 종료
2	조특법 §106①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4년 종료
3	조특법 §116①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24년 종료

* 경과규정 중 '24~'25년 감면액이 없는 경우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

V.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 '27년 조세지출 효과 발생 시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조세지출 내역 작성
(예: (부가가치세 등) '27년 개정 규정을 토대로 효과 발생 → 개정안 반영
(소득세 등) 현행 규정을 토대로 '27년 신고·정산 등으로 효과 발생 → 현행 규정 반영

1.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1) 중소기업 [제1절]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창업 및 벤처 (110-11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도입목적: 창업기업의 생존 및 기반 확충 ▪ 수혜자: 창업중소기업 등* * 일반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청년기업, 생계형 ▪ 수혜내용: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 '25.12.31.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일반창업 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생계형 100%, 그 외 50% * '26.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일반창업 0%, 과밀 외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일반창업 25%, 과밀 외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생계형 75%, 수도권 밖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청년·생계형 100%, 그 외 50% ▪ 적용기한: '27.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9,181 소득세 (6,559) 법인세 (2,622)	계 10,413 소득세 (7,978) 법인세 (2,435)	계 10,634 소득세 (8,301) 법인세 (2,333)
2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도입목적: 중소기업 경영안정 ▪ 수혜자: 중소기업 ▪ 수혜내용: - 사업장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3,404 소득세 (12,975) 법인세 (10,429)	계 22,875 소득세 (12,793) 법인세 (10,082)	계 24,380 소득세 (13,779) 법인세 (10,60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도입목적: 기업간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 ▪ 수혜자: 중소·중견기업 ▪ 수혜내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지급기한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 지급기한별 공제율: (15일 이내) 0.5% (16일 ~ 30일) 0.3% (31일 ~ 60일) 0.15%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33 소득세 (1) 법인세 (32)	계 40 소득세 (0.9) 법인세 (39)	계 42 소득세 (1) 법인세 (41)
4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도입목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 수혜자: 내국법인 중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자 ▪ 수혜내용: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장부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③ 내국인이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 투자금액의 1% (중견 3%, 중소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해당 자산 시가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 (협력중소기업 지원 10%, 협력중견기업 지원 5%)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80 소득세 (0.7) 법인세 (279)	계 257 소득세 (0.5) 법인세 (256)	계 270 소득세 (0.5) 법인세 (269)
중소기업 합계 (4)			32,898	33,585	35,326

[2] 연구개발 [제2절]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산업혁신 지원 (110-117)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도입목적: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 ▪ 수혜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 수혜내용: - 신성장·원천기술 당기분 R&D비용의 최대 30%(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를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당기분 R&D비용의 최대 40%(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를 세액공제 - 일반 R&D 비용은 ①, ② 방식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① 당기분: 당해연도 지출액 × 0%~2% (중견기업 8%~20%, 중소기업 25%) ② 증가분: 직전연도 지출액 초과분 × 25%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 적용기한: 없음 * 신성장·국가전략기술은 '29. 12. 31.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31.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41,476 소득세 (952) 법인세 (40,524)	계 69,385 소득세 (868) 법인세 (68,517)	계 105,114 소득세 (935) 법인세 (104,179)
2	산업혁신 지원 (110-117)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도입목적: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 ▪ 수혜자: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연구개발비 지출 시 또는 연구개발 자산 취득 시 익금 환입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3 소득세 (0) 법인세 (3)	계 3 소득세 (0) 법인세 (3)	계 5 소득세 (0) 법인세 (5)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	산업혁신 지원 (110-117)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도입목적: 기업 간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 지원 ▪ 수혜자: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중견·중소기업,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내국인,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 수혜내용: 이전소득의 50% 세액감면,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 ▪ 적용기한: '26. 12. 31. * 취득금액의 5% 세액공제(제12조 제2항)은 '18.12.31. 취득 분까지 적용 【적극적 관리대상】	계 2 소득세 (0.01) 법인세 (2)	계 3 소득세 (0.01) 법인세 (3)	계 3 소득세 (0.01) 법인세 (3)
4	과학기술 연구지원 (150-15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도입목적: 공공연구기관 보유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을 통해 성공적 특구 육성 및 국가 경제발전 기여 ▪ 수혜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수혜내용: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57 소득세 (0) 법인세 (157)	계 89 소득세 (0) 법인세 (89)	계 94 소득세 (0) 법인세 (94)
5	산업혁신 지원 (110-11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4 ▪ 도입목적: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 활성화 ▪ 수혜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내국법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양도(인수) 가액 중 기술 가치 금액의 5%를 법인세액 공제 ▪ 적용기한: '27.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32 법인세 (32)	계 29 법인세 (29)	계 31 법인세 (3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6	창업 및 벤처 (110-118)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도입목적: 기관투자자의 조합출자 지속 참여 유도를 통해 창업자·벤처기업투자 활성화 ▪ 수 혜 자: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 ▪ 수혜내용: 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② 벤처투자회사 등에 출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20 법인세 (120)	계 176 법인세 (176)	계 185 법인세 (185)
7	창업 및 벤처 (110-118)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도입목적: 벤처기업의 자본확충지원 ▪ 수 혜 자: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① 출자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 시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증가분의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564 법인세 (564)	계 389 법인세 (389)	계 410 법인세 (41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8	창업 및 벤처 (110-118)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 도입목적: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 수혜자: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① 출자: 지분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② 인수: 인수금액의 5% 세액공제 (중건 7%, 중소 10%) * 공제대상 한도(건당) = Min[총 인수금액, 5천억원]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9	창업 및 벤처 (110-118)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도입목적: 벤처투자 확대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의 수익과 손실 불균형 치유 ▪ 수혜자: 투자자, 벤처투자조합 등 ▪ 수혜내용: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68 소득세 (68)	계 123 소득세 (123)	계 134 소득세 (134)
10	창업 및 벤처 (110-118)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도입목적: 벤처투자 활성화 ▪ 수혜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 수혜내용: '18.1.1.부터 '28.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1	창업 및 벤처 (110-118)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도입목적: 벤처투자시장 저변 확대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 수혜자: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 ▪ 수혜내용: - 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출자·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30~100%* 소득공제 ▪ * 5천만원 초과 30%, 5천만원 이하~3천만원 초과 70%, 3천만원 이하 100%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968 소득세 (1,968)	계 1,980 소득세 (1,980)	계 2,145 소득세 (2,145)
12	창업 및 벤처 (110-11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도입목적: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 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 ▪ 수혜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원 등 ▪ 수혜내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및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 5억원 한도 ▪ 적용기한: '27.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352 소득세 (352)	계 320 소득세 (320)	계 353 소득세 (353)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3	창업 및 벤처 (110-11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도입목적: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 ▪ 수혜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원 등 ▪ 수혜내용: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5분의1, 5회) 가능 ②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 대신 행사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양도소득세) 선택 가능 ▪ 적용기한: '27.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8 소득세 (8)	계 10 소득세 (10)	계 14 소득세 (14)
14	산업혁신 지원 (110-11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도입목적: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입 가속화를 통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 수혜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수혜내용: 10년간 근로소득세 50%감면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39 소득세 (139)	계 142 소득세 (142)	계 154 소득세 (154)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5	산업혁신 지원 (110-11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도입목적: 국내에서 필요한 외국선진기술 도입 및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치 촉진 ▪ 수혜자: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 수혜내용: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 분리과세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3,545 소득세 (3,545)	계 3,774 소득세 (3,774)	계 4,152 소득세 (4,152)
16	산업혁신 지원 (110-117)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 도입목적: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 수혜자: 국내에 복귀한 우수인력* 내국인 *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 과학기술 관련 외국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20.1.1.이후 취업분부터 적용) ▪ 수혜내용: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89 소득세 (89)	계 47 소득세 (47)	계 52 소득세 (52)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7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도입목적: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 수혜자: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과 지급받은 근로자 ▪ 수혜내용: 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한 경우는 제외 ② 근로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 50% 세액감면 ▪ 적용기한: '27.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97 소득세 (81) 법인세 (116)	계 182 소득세 (90) 법인세 (92)	계 199 소득세 (99) 법인세 (100)
18	산업혁신 지원 (110-117)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 도입목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지원 ▪ 수혜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수혜내용: 해당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적용기한: '31.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계 136 증여세 (136)
연구개발 합계 (18)			48,720	76,652	113,181

[3] 국제자본거래 [제3절]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재정금융 (010-014)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 도입목적: 공공차관 도입 지원 ▪ 수혜자: 공공차관 대주(貸主), 외국인 기술제공자 ▪ 수혜내용: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貸主)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2	재정금융 (010-014)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도입목적: 국제금융거래 활성화 ▪ 수혜자: 비거주자 ▪ 수혜내용: 비거주자가 받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수료, 유가증권 양도 시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24 소득세 (0) 법인세 (24)	계 1 소득세 (0) 법인세 (1)	계 1 소득세 (0) 법인세 (1)
국제자본거래 합계 (2)			24	1	1

[4] 투자촉진 (제4절)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산업혁신 지원 (110-117)	통합투자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도입목적: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 수혜자: 모든 내국인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수혜내용: ① + ② 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제외) 투자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중견기업 5%~7.5%, 중소기업 10%) * 신성장·원천기술: 3% (중견 6%~9%, 중소 12%) 국가전략기술: 15% (중견 15%~20%, 중소 25%) ② 직전 3년 평균투자액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없음(국가전략기술은 '29.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 기존 중소·중견기업(§5), R&D 설비(§25①1), 에너지 절약시설(§25①2), 환경보전시설(§25①3),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25①4), 안전설비(§25①5), 생산성 향상 시설(§25①6),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25의4),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25의5),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 (§25의7) 등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20) →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 집계	계 24,887 소득세 (523) 법인세 (24,364)	계 60,116 소득세 (590) 법인세 (59,526)	계 165,583 소득세 (630) 법인세 (164,953)
2	문화예술 (060-06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 도입목적: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수혜자: 내국인 영상제작자 ▪ 수혜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세액공제(중소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의 경우 추가 10% 세액공제(중소 15%)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47 소득세 (2) 법인세 (245)	계 333 소득세 (2) 법인세 (331)	계 667 소득세 (2) 법인세 (665)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	문화예술 (060-061)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 도입목적: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 수혜자: 내국법인 ▪ 수혜내용: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3% 세액공제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01 법인세 (0.01)	계 0.01 법인세 (0.01)
4	문화예술 (060-06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 도입목적: 웹툰콘텐츠 제작지원 ▪ 수혜자: 내국인 웹툰제작자 ▪ 수혜내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세액공제(중소 15%)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계 28 소득세 (0) 법인세 (28)
5	산업혁신 지원 (110-117)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도입목적: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 지원 ▪ 수혜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 사회기반시설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혜내용: 배당소득 분리과세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요건) 1명당 1개의 전용계좌, 전용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전용계좌 납입한도 1억원 이하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투융자집합기구 투자로
과세특례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로
재계산하기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6	산업혁신 지원 (110-117)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 도입목적: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 수혜자: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중소기업 *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 ▪ 수혜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투자촉진 합계 (6)			25,134	60,449	166,278

[5] 고용지원 [제4절의2]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고용 (080-08D)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 도입목적: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수혜자: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상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줄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 수혜내용: - ①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세액공제 - ②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20% 세액공제 선택 가능(단,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③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추가 세액공제 *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정규직 전환근로자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19 소득세 (36) 법인세 (83)	계 90 소득세 (24) 법인세 (66)	계 94 소득세 (25) 법인세 (69)
2	고용 (080-08D)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 도입목적: 중소·벤처기업 청년 및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 수혜자: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3년 이상 납입 근로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제외 ▪ 수혜내용: 공제금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 청년 근로자: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청년 외 근로자: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적용기한: '27.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22 소득세 (222)	계 141 소득세 (141)	계 155 소득세 (155)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	고용 (080-08D)	통합고용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도입목적: 기업의 고용확대 지원																																						
		▪ 수혜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수혜내용: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①+②)																																						
		- ① 일반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공제적용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단위: 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 (제1항)</th><th colspan="2">중소</th><th rowspan="2">중견</th><th rowspan="2">그 외</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 rowspan="3">청년 등*</td><td>1년차</td><td>700</td><td>1,000</td><td>500</td><td>300</td></tr><tr><td>2년차</td><td>1,600</td><td>1,900</td><td>900</td><td>500</td></tr><tr><td>3년차</td><td>1,700</td><td>2,000</td><td>900</td><td>-</td></tr><tr><td rowspan="3">청년 등 외</td><td>1년차</td><td>400</td><td>700</td><td>300</td><td rowspan="3">-</td></tr><tr><td>2년차</td><td>900</td><td>1,200</td><td>500</td></tr><tr><td>3년차</td><td>1,000</td><td>1,300</td><td>500</td></tr></table>	구분 (제1항)	중소		중견	그 외	수도권	지방	청년 등*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청년 등 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계
구분 (제1항)	중소			중견	그 외																																			
	수도권	지방																																						
청년 등*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청년 등 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 청년,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43,035	45,542	48,414																																					
- ② 추가공제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18,518)	(20,688)	(22,279)																																					
* 공제적용기간: 1년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																																					
(단위: 만원)	(24,517)	(24,854)	(26,135)																																					
<table><tr><th>구분</th><th>중소</th><th>중견</th></tr><tr><td>육아휴직 복귀자(제4항)</td><td>1,300</td><td>900</td></tr></table>	구분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제4항)	1,300	900																																		
구분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제4항)	1,300	900																																						
▪ 적용기한: ① 일반공제 : '28. 12. 31.																																								
② 추가공제 :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29의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30의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통합('22)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4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가능																																								
→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4	고용 (080-08D)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도입목적: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 수혜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 ▪ 수혜내용: 취업 후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70% 감면(청년의 경우 90%) *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200만원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1,608 소득세 (11,608)	계 12,297 소득세 (12,297)	계 14,239 소득세 (14,239)
5	고용 (080-08D)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도입목적: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유도 ▪ 수혜자: 종업원의 근로시간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및 근로자 ▪ 수혜내용: - (기업) 임금삭감액의 10%, - 임금보전액의 15% 세액공제 - (근로자)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연간 1천만원 한도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6 소득세 (5.1) 법인세 (0.8)	계 9 소득세 (8.2) 법인세 (1)	계 10 소득세 (8.2) 법인세 (2)
고용지원 합계 (5)			54,990	58,079	62,912

[6] 기업구조조정 [제5절]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창업 및 벤처 (110-11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도입목적: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도모 ▪ 수혜자: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중소기업 창업자 ▪ 수혜내용: 창업자금 증여시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 * 50억 한도(10명 이상 신규고용시 100억)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55 증여세 (55)	계 17 증여세 (17)	계 19 증여세 (19)
2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도입목적: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경영이념의 일관성 유지, 기술적 발전을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유도 ▪ 수혜자: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 수혜내용: 증여 시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 부모가 계속 경영한 기간에 따라 차등한도 적용 (10~20년: 300억, 20~30년: 400억, 30년~: 600억/ '27.7.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특례한도는 부모의 경영연수 ×20억원(최대 1,000억원))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4,388 증여세 (4,388)	계 5,894 증여세 (5,894)	계 6,502 증여세 (6,502)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 도입목적: 가업승계시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수혜자: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 수혜내용: 가업승계를 받은 수증자가 재차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10 증여세 (10)	계 0 증여세 (0)	계 0 증여세 (0)
4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 도입목적: 통합·법인전환의 활성화 유도 ▪ 수혜자: 중소기업간 통합,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자 ▪ 수혜내용: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이월과세 ▪ 적용기한: 없음 【잠재적 관리대상】	계 308 소득세 (306) 법인세 (2)	계 324 소득세 (321) 법인세 (3)	계 286 소득세 (283) 법인세 (3)
5	산업혁신 지원 (110-117)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 도입목적: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 수혜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양도차익상당액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6.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0.1 법인세 (0.1)	계 0.1 법인세 (0.1)	계 0.08 법인세 (0.08)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6	산업혁신 지원 (110-117)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2 ▪ 도입목적: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 수혜자: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양도차익상당액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6.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규모 및 이에 따른 과세이연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7	산업혁신 지원 (110-11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도입목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 ▪ 수혜자: 완전자회사의 주주, 완전모회사 ▪ 수혜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완전모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없음 【잠재적 관리대상】	계 141 소득세 (137) 법인세 (4)	계 139 소득세 (135) 법인세 (4)	계 158 소득세 (154) 법인세 (4)
8	산업혁신 지원 (110-117)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도입목적: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촉진 ▪ 수혜자: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자 등 ▪ 수혜내용: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27.1.1. 이후 현물출자·교환하는 부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적용기한: '29.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445 소득세 (445) 법인세 (0)	계 161 소득세 (161) 법인세 (0)	계 40 소득세 (40) 법인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9	산업혁신 지원 (110-117)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4 ▪ 도입목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 ▪ 수혜자: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수혜내용: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 하여 외국법인 신설 시 또는 기존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8.12.31. 【잠재적 관리대상】	-	신설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를 통한 외국법인 신설 등 수요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10	산업혁신 지원 (110-117)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 도입목적: 부실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 수혜자: 자회사의 채무를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인수·변제하는 모회사 ▪ 수혜내용: 모회사는 인수·변제금액을 손금 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 이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청산하는 경우 해산시 익금산입) ▪ 적용기한: '26. 12. 31. * 청산계획서를 제출시 '27.12.31.까지 청산 종결 【잠재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1	산업혁신 지원 (110-117)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도입목적: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지원 ▪ 수혜자: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내국법인, 자산을 증여한 주주 등 ▪ 수혜내용 - (과세이연) 증여받은 자산가액 만큼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법인주주는 증여가액 손금산입) -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대금 증여 시 증여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 100% 세액감면 또는 익금불산입 ▪ 적용기한: '26.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12	산업혁신 지원 (110-117)	채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 도입목적: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 수혜자: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희생계획인가 결정 법인 등 ▪ 수혜내용: ①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은 채무면제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 상당액 손금산입 ▪ 적용기한: '26.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0.02 법인세 (0.02)	계 0.02 법인세 (0.02)	계 0.03 법인세 (0.03)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3	산업혁신 지원 (110-11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 도입목적: 벤처 투자 지원 ▪ 수혜자: 제휴법인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 ▪ 수혜내용: 양도차익에 대해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7.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2 소득세 (2)	계 1 소득세 (1)	계 0.5 소득세 (0.5)
14	산업혁신 지원 (110-117)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 도입목적: 벤처 재투자 활성화 ▪ 수혜자: 벤처기업 등의 주식 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한 창업주 또는 발기인 ▪ 수혜내용: 양도대금의 50% 이상 재투자 시,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을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3 소득세 (13)	계 13 소득세 (13)	계 3 소득세 (3)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5	창업 및 벤처 (110-118)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 도입목적: 벤처기업 성장 지원 ▪ 수혜자: 벤처기업 창업주 (벤처기업의 발기인&상무등기이사& 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 ▪ 수혜내용: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 현물출자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기업구조조정 합계 (15)			5,362	6,549	7,009

[7] 금융기관 구조조정 (제6절)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채정금융 (010-014)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 도입목적: 부실 금융기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리 ▪ 수혜자: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금융기관 ▪ 수혜내용: 부실금융기관 부채 인수 시 이전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액 손금산입 ▪ 적용기한: '26.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금융기관 구조조정 합계 (1)			0	0	0

[8] 지역 균형발전 (제7절)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지방행정 재정지원 (010-013)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도입목적: 고향 기부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수혜자: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거주자 ▪ 수혜내용: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 20만원 이하) 40/100 (20만원 ~ 2천만원 이하) 15/100<특별재난지역은 30/100> * 사업자인 거주자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 적용기한: 없음 【잠재적 관리대상】	계 617 소득세 (617)	계 1,120 소득세 (1,120)	계 1,369 소득세 (1,369)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	산업혁신 지원 (110-117)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도입목적: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균형발전 기여 ▪ 수혜자: 대도시권내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 법인세 (1)	계 1 법인세 (1)	계 1 법인세 (1)
3	산업혁신 지원 (110-117)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도입목적: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균형발전 기여 ▪ 수혜자: 본사·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 수혜내용: 본사 등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4 법인세 (4)	계 3 법인세 (3)	계 3 법인세 (3)
4	지역 및 도시 (140-14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 도입목적: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균형발전 기여 ▪ 수혜자: 혁신도시·세종시 이전 기관 ▪ 수혜내용: -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18.12.31.까지 성장관리권역에 본사가 소재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 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5	산업혁신 지원 (110-117)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도입목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의 이전을 촉진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수혜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 이상 (중소기업 2년)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수혜내용: ①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i)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중소기업한정),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 5년 100% + 3년 50% ii) 지방광역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기타지역 : 7년 100% + 4년 50% iii) 중규모도시·기타지역 중 낙후지역: 10년 100% + 5년 50% ② 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8. 12. 31. *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28.12.31.까지 공장 부지 보유, 이전계획서 제출 시 '31.12.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771 소득세 (141) 법인세 (630)	계 776 소득세 (136) 법인세 (640)	계 944 소득세 (147) 법인세 (797)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6	산업혁신 지원 (110-117)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도입목적: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균형발전 기여 ▪ 수혜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한 법인으로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 ▪ 수혜내용: ① 이전 후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기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i)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 5년 100% + 3년 50% ii) 지방광역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기타지역: 7년 100% + 4년 50% iii) 중규모도시·기타지역 중 낙후지역: 10년 100% + 5년 50% ② 본사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8. 12. 31. *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28.12.31.까지 본사 부지 보유, 이전계획서 제출 시 '31.12.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489 법인세 (489)	계 1,065 법인세 (1,065)	계 1,190 법인세 (1,190)
7	산업혁신 지원 (110-117)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도입목적: 개발수준이 비교적 현저히 낮은 지역에 민간 사업시행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기업유치를 통한 소득 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 ▪ 수혜자: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소기업 ▪ 수혜내용: 입주 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세액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96 소득세 (0.1) 법인세 (96)	계 99 소득세 (0.4) 법인세 (99)	계 105 소득세 (0.5) 법인세 (104)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8	농업 및 농촌 (100-10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도입목적: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 ▪ 수혜자: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및 농업인 ▪ 수혜내용: ① 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 및 그 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② 조합원: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전액과 그 외 소득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의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 면제하고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경우 5% 원천징수(합산배제) ③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396 소득세 (200) 법인세 (196)	계 481 소득세 (275) 법인세 (206)	계 518 소득세 (301) 법인세 (217)
9	수산 및 어촌 (100-103)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도입목적: 어업경쟁력 제고, 어업인 소득증대, 영어조합법인의 규모화 및 자본 구조 개선 촉진 ▪ 수혜자: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및 어업인 ▪ 수혜내용: ① 영어조합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② 조합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 배당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하고 배당 소득이 과세되는 경우 5% 원천징수(합산배제) ③ 어업인: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52 소득세 (0) 법인세 (52)	계 67 소득세 (0.5) 법인세 (66)	계 70 소득세 (0.5) 법인세 (69)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0	농업 및 농촌 (100-10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도입목적: 기업적 농업경영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수혜자: 농업회사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농업인·거주자 ▪ 수혜내용: ① 농업회사법인: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과 그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그 외 소득은 5년간 50% 세액감면 ②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③ 거주자: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면제, 기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미합산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31 소득세 (4) 법인세 (227)	계 266 소득세 (2) 법인세 (264)	계 280 소득세 (3) 법인세 (277)
11	농업 및 농촌 (100-10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도입목적: 소유 농지의 장기간 성실경작의 장려를 통해 농지 보전 유도 ▪ 수혜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경작) ▪ 수혜내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없음 * 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 양도특례는 '26.12.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7,578 소득세 (7,578)	계 6,999 소득세 (6,999)	계 7,627 소득세 (7,627)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2	농업 및 농촌 (100-10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 도입목적: 국내 축산농가의 구조조정 지원 ▪ 수혜자: 축사용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주자 ▪ 수혜내용: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04 소득세 (104)	계 128 소득세 (128)	계 139 소득세 (139)
13	수산 및 어촌 (100-10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 도입목적: 농업인과 형평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지원 ▪ 수혜자: 어업용 토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주자 ▪ 수혜내용: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6 소득세 (16)	계 24 소득세 (24)	계 26 소득세 (26)
14	임업 및 산촌 (100-102)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 도입목적: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 수혜자: 산림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수혜내용: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경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10%~50% 감면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2 소득세 (2)	계 0.8 소득세 (0.8)	계 0.9 소득세 (0.9)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5	농업 및 농촌 (100-10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도입목적: 농지 소유자의 지속적인 농업경영 활동 지원, 농지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경영합리화 장려 ▪ 수혜자: 농지를 대체취득한 자 (종전 농지 4년 이상 자경, 종전·신규취득 농지 합산 8년 이상 자경) ▪ 수혜내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345 소득세 (345)	계 255 소득세 (255)	계 277 소득세 (277)
16	농업 및 농촌 (100-101)	경영희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 도입목적: 경영위기 농업인 지원 ▪ 수혜자: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 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한 농업인 (상속인 포함) ▪ 수혜내용: 농어촌공사에 양도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17	농업 및 농촌 (100-10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도입목적: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조기 이전토록 함으로써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의 세대교체 촉진 ▪ 수혜자: 영농자녀 등 ▪ 수혜내용: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초지·산림지 등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486 증여세 (486)	계 511 증여세 (511)	계 564 증여세 (564)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8	지역 및 도시 (140-14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 도입목적: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수혜자: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자 ▪ 수혜내용: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① 인구감소지역 소재(다만, 수도권·광역시 제외 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②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다만,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③ ①, ② 외의 비수도권지역 소재(광역시 제외) ④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수도권 밖 9억원) 인구감소관심지역: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그 외 비수도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 적용기한: '29.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적용대상 규모를 사전 파악하기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19	지역 및 도시 (140-142)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 도입목적: 비수도권 이주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 수혜자: 고령(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 수혜내용: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 이주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 '27년 50%(5억원 한도), '28년 30%(3억원 한도)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계 0 소득세 (0)
			※ 추정곤란 사유 - 고령 1주택자의 주택 거래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지역균형발전 합계 (19)			11,188	11,796	13,114

[9] 공익사업 지원 (제8절)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농업 및 농촌 (100-10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도입목적: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지원 재원 마련 유도 ▪ 수혜자: 농협·수협·산림조합, 신협·새마을금고 등 ▪ 수혜내용: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저율과세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5%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655 법인세 (2,655)	계 2,610 법인세 (2,610)	계 2,171 법인세 (2,171)
2	사회복지 일반 (080-08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4항 ▪ 도입목적: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활성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 수혜자: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등 ▪ 수혜내용: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936 법인세 (936)	계 440 법인세 (440)	계 463 법인세 (463)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	사회복지 일반 (080-089)	기부장려금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 도입목적: 기부문화 정착, 기부금단체 재정 확충 ▪ 수혜자: 기부장려금단체 ▪ 수혜내용: 기부자가 신청 시, 기부금 세액 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수령한 기부장려금 단체에 지급 * 환급액: 기부액의 15%, 1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30%(한도: 기부자의 결정세액) ▪ 적용기한: 없음 【잠재적 관리대상】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4	입법 및 선거관리 (010-011)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도입목적: 정치자금 기부 촉진 ▪ 수혜자: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거주자 ▪ 수혜내용: ① 기부자: 정당 및 후원회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10만원까지 해당 금액의 100/110, 3천만원까지 15/100, 3천만원 초과분은 25/100) * 사업자인 거주자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② 정당: 상속세·증여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잠재적 관리대상】	계 357 소득세 (357)	계 406 소득세 (406)	계 442 소득세 (442)
5	지역 및 도시 (140-14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도입목적: 공익사업 촉진 및 원활한 수행 ▪ 수혜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 등 ▪ 수혜내용: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5%~45% 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428 소득세 (2,428)	계 3,709 소득세 (3,709)	계 4,042 소득세 (4,042)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6	지역 및 도시 (140-14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 도입목적: 공익사업 촉진 및 원활한 수행 ▪ 수혜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거주자 ▪ 수혜내용: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28 소득세 (128)	계 111 소득세 (111)	계 103 소득세 (103)
7	지역 및 도시 (140-142)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 도입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혜택 부여 ▪ 수혜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한 자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포함 ▪ 수혜내용: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40% 세액감면 ② 매수청구일, 협의매수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25% 세액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01 소득세 (101)	계 274 소득세 (274)	계 299 소득세 (299)
8	고용 (080-08D)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 도입목적: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수혜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수혜내용: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① 사회적기업: 3년간 100% + 2년간 50% ② 장애인 표준사업장: 3년간 100% + 2년간 50% + 5년간 30%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55 소득세 (29) 법인세 (126)	계 225 소득세 (99) 법인세 (126)	계 239 소득세 (107) 법인세 (132)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9	지역 및 도시 (140-142)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 도입목적: 수용으로 인한 공장이전시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수혜자: 공익사업으로 공장(대지 및 건물)이 수용된 내국법인 및 거주자 ▪ 수혜내용: - (내국법인)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거주자)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2 소득세 (0.02) 법인세 (0.2)	계 0.4 소득세 (0) 법인세 (0.4)	계 0.7 소득세 (0) 법인세 (0.7)
10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 도입목적: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 수혜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2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 수혜내용: - (내국법인)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거주자)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 소득세 (0) 법인세 (1)	계 1 소득세 (0) 법인세 (1)	계 1 소득세 (0) 법인세 (1)
11	물류 등 기타 (120-12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 도입목적: 기업의 생산 및 유통활동 지원 ▪ 수혜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 (내국법인)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거주자)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공익사업지원 합계 (11)			6,761	7,776	7,761

(10) 저축지원 (제9절)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도입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대비해 스스로 자금을 적립하도록 유도 ▪ 수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거주자 ▪ 수혜내용: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법정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table> <tr> <th>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th> <th>공제한도</th> </tr> <tr> <td>4천만원 이하</td> <td>600만원</td> </tr> <tr> <td>4천만원 ~ 6천만원</td> <td>500만원</td> </tr> <tr> <td>6천만원~1억원</td> <td>400만원</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able>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 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계 3,810 소득세 (3,810)	계 4,449 소득세 (4,449)	계 4,794 소득세 (4,794)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 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	주택 (080-08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도입목적: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 지원 ▪ 수혜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 ▪ 수혜내용: 과세기간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3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433 소득세 (433)	계 486 소득세 (486)	계 532 소득세 (532)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	주택 (080-088)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 도입목적: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 형성 지원 ▪ 수 혜 자: 총급여 3천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이고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청년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5 소득세 (5)	계 10 소득세 (10)	계 11 소득세 (11)
4	채정금융 (010-01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 도입목적: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소득 보전 ▪ 수 혜 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 적용기한: (소득세) '26. 12. 31. (상속·증여세)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47 소득세 (47)	계 37 소득세 (37)	계 31 소득세 (3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5	사회복지 일반 (080-089)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 도입목적: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활성화 지원 ▪ 수혜자: 공모부동산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거주자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투자금액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단, 해외부동산 투자 펀드·리츠 제외) ▪ 적용기한: '29.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 소득세 (2)	계 2 소득세 (2)	계 2 소득세 (2)
6	사회복지 일반 (080-089)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도입목적: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 ▪ 수혜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기초연금 대상 노인 및 장애인 등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비과세종합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7,996 소득세 (7,996)	계 7,347 소득세 (7,347)	계 5,770 소득세 (5,77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7	노동 (080-08E)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도입목적: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 노·사 간 협력체제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수혜자: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조합원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소액주주이고 액면가액 합계 1,800만원 이하)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1,280 소득세 (1,280)	계 1,541 소득세 (1,541)	계 1,688 소득세 (1,688)
8	농업 및 농촌 (100-101)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89조의3 ▪ 도입목적: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저축의욕 고취 ▪ 수혜자: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 배당소득 비과세(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 이자소득 비과세(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 적용기한: ① 조합원·회원 등 거주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8.12.31.까지 비과세('29.12.31.까지 5% 저율 분리과세, '30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② 그 밖의 가입자: '25.12.31.까지 비과세('26.12.31.까지 5% 저율 분리과세, '27년 이후 9% 저율 분리과세) 【적극적 관리대상】	계 9,110 소득세 (9,110)	계 7,800 소득세 (7,800)	계 7,749 소득세 (7,749)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9	재정금융 (010-0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도입목적: 국민 자산형성 지원 ▪ 수혜자: ISA를 통해 주식·펀드, 예·적금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비과세금액 차등적용 <table><thead><tr><th>소득수준</th><th>비과세금액</th></tr></thead><tbody><tr><td>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농·어·민(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td><td>400만원</td></tr><tr><td>그 외</td><td>200만원</td></tr></tbody></table> - 비과세금액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소득수준	비과세금액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농·어·민(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그 외	200만원	계 379 소득세 (379)	계 767 소득세 (767)	계 816 소득세 (816)
소득수준	비과세금액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농·어·민(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그 외	200만원										
10	재정금융 (010-014)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 도입목적: 청년 장병의 전역 후 취업활동 자금형성 지원 ▪ 수혜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복무 중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 복무자, 사회 복무요원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복무기간 동안 월 55만원('24.12.31.까지는 월 40만원) 이내 납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 한도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47 소득세 (47)	계 76 소득세 (76)	계 81 소득세 (8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1	재정금융 (010-014)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 도입목적: 국채수요 기반 다양화 및 개인 장기저축수단 제공 ▪ 수혜자: 「국채법」상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 만기까지 보유한 거주자 ▪ 수혜내용: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 1인당 국채 매입한도 총 2억원 ▪ 적용기한: 27. 12. 31.까지 매입분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12	재정금융 (010-014)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 도입목적: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수혜자: 청년미래적금 개설 청년층 * ① 만 19~34세 ②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소상공인으로서 매출액 3억원 이하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계좌(연600만원 납입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가입자수 및 적용대상 규모 등에 대해 사전에 합리적인 추정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3	재정금융 (010-014)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 도입목적: 국내투자 복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 수혜자: 국내시장복귀계좌 가입자 ▪ 수혜내용: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시점에 따라 50~100% 공제 <table> <tr> <th>양도시점</th> <th>공제율</th> </tr> <tr> <td>'26.1.1.~'26.5.31.</td> <td>100%</td> </tr> <tr> <td>'26.6.1.~'26.7.31.</td> <td>80%</td> </tr> <tr> <td>'26.8.1.~'26.12.31.</td> <td>50%</td> </tr> </table>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양도시점	공제율	'26.1.1.~'26.5.31.	100%	'26.6.1.~'26.7.31.	80%	'26.8.1.~'26.12.31.	50%	-	신설	추정 곤란
		양도시점	공제율										
'26.1.1.~'26.5.31.	100%												
'26.6.1.~'26.7.31.	80%												
'26.8.1.~'26.12.31.	50%												
			※ 추정곤란 사유 - 가입자수 및 적용대상 규모 등에 대해 사전에 합리적인 추정 곤란										
14	재정금융 (010-014)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 도입목적: 개인투자자 환율변동위험 관리 지원 ▪ 수혜자: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 수혜내용: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가입자수 및 적용대상 규모 등에 대해 사전에 합리적인 추정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5	재정금융 (010-01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 도입목적: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 수혜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액에 대해 10~40% 소득공제 <table><tr><th>투자금액</th><th>공제율</th></tr><tr><td>3천만원 이하</td><td>40%</td></tr><tr><td>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td><td>20%</td></tr><tr><td>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td><td>10%</td></tr></table> -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일로부터 5년 간 9% 분리과세 * 1인당 투자금액 총 2억원 한도 ▪ 적용기한: '30.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투자금액	공제율	3천만원 이하	4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10%	-	신설	추정 곤란
		투자금액	공제율										
3천만원 이하	4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10%												
		※ 추정곤란 사유 - 가입자수 및 적용대상 규모 등에 대해 사전에 합리적인 추정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6	재정금융 (010-014)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9조 ▪ 도입목적: 국내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 수혜자: 생산적금융 ISA를 통해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청년층 납입액 10%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가입자수 및 적용대상 규모 등에 대해 사전에 합리적인 추정 곤란		
17	재정금융 (010-014)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30조 ▪ 도입목적: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수혜자: 전용계좌를 통해 BDC에 투자하는 투자자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 적용기한: '29.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가입자수 및 적용대상 규모 등에 대해 사전에 합리적인 추정 곤란		
저축지원 합계 (17)			23,109	22,515	21,474

[11] 국민생활 안정 [제10절]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여성·가족·청소년 (080-08C)	혼인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도입목적: 결혼비용 지원 ▪ 수혜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수혜내용: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 '26.12.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218 소득세 (1,218)	계 1,416 소득세 (1,416)	계 1,546 소득세 (1,546)
2	주택 (080-088)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도입목적: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수혜자: 월세액을 지급하는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수혜내용: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계약 체결시 월세 지급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월세액 10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4,635 소득세 (4,635)	계 5,602 소득세 (5,602)	계 6,236 소득세 (6,236)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	주택 (080-08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도입목적: 전·월세 수급불안 해소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수혜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 수혜내용: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 임대주택 호수에 따라 1호 30%(75%)*, 2호 이상 20%(50%)* * 괄호 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22 소득세 (209) 법인세 (13)	계 261 소득세 (243) 법인세 (18)	계 281 소득세 (262) 법인세 (19)
4	사회복지 일반 (080-08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도입목적: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지원 ▪ 수혜자: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임대인 ▪ 수혜내용: '20.1월~'28.12월 인하한 임대료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380 소득세 (303) 법인세 (77)	계 311 소득세 (237) 법인세 (74)	계 334 소득세 (256) 법인세 (78)
5	주택 (080-08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도입목적: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 수혜자: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 수혜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특례 적용 * 10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한정 * 동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적용기한: '27. 12. 31.까지 등록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장기보유로 인해 과세특례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로 재계산하기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6	주택 (080-08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 도입목적: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 수혜자: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임대사업자 ▪ 수혜내용: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 공제율(2%~10%) 추가 적용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장기보유로 인해 과세특례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로 재계산하기 곤란		
7	산업혁신 지원 (110-117)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 도입목적: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 수혜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현물출자한 내국인·내국법인 ▪ 수혜내용: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취득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적용대상 규모를 사전 파악하기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8	주택 (080-088)	공공매입 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0 ▪ 도입목적: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수혜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자 ▪ 수혜내용: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10% 세액감면 ▪ 적용기한: '27.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62 소득세 (62)	계 35 소득세 (35)	계 38 소득세 (38)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9	주택 (080-088)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2 ▪ 도입목적: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 ▪ 수혜자: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보유주택의 협의매수로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받은 자 (기존 1세대 1주택자에 한정) ▪ 수혜내용: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을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에 준하는 특례* 적용 *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및 장특공제 우대 (최대 80%) ▪ 적용기한: '29.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적용대상 규모를 사전 파악하기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10	지역 및 도시 (140-142)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 도입목적: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 ▪ 수혜자: 미분양주택 취득자 ▪ 수혜내용: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된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주택(전용 면적 85㎡, 취득가액 7억원 이하)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적용대상 규모를 사전 파악하기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1	농업 및 농촌 (100-101)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도입목적: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 및 귀농·귀촌 지원 ▪ 수혜자: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 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자 ▪ 수혜내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산입 제외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신고서에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감면세액을 기재하지 않아 별도 세액 계산이 곤란		
12	지역 및 도시 (140-14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 도입목적: 위기지역 창업지원 ▪ 수혜자: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 ▪ 수혜내용: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433 소득세 (268) 법인세 (165)	계 339 소득세 (228) 법인세 (111)	계 281 소득세 (200) 법인세 (8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3	중소기업 손상공인 육성 (110-11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 ▪ 도입목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 수 혜 자: 소상공인 ▪ 수혜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신고서식 상 조세지출 금액 산출이 곤란		
14	노인 (080-08B)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 ▪ 도입목적: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수 혜 자: 기초연금 수급자 ▪ 수혜내용: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로,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시,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 납입액(1억원한도)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7.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1 소득세 (0.1)	계 0.02 소득세 (0.02)	계 0.02 소득세 (0.02)
국민생활안정 합계 (14)			6,950	7,964	8,716

[12] 근로 및 자녀장려 (제10절의2, 4)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기초생활 보장 (080-081)	근로장려금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3			
		▪ 도입목적: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수혜자: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 수혜내용: 근로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및 지급액			
				</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기초생활보장(080-081)	자녀장려금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31 ▪ 도입목적: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 수혜자: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 수혜내용: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세금 환급방식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신청자격(모두 충족)								
	<table><thead><tr><th>신 청 자 격</th><th>지급액</th></tr></thead><tbody><tr><td>① 홀별이 가구 - 가구 요건: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소득 요건: 연간총소득* 年 7,000만원 미만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교인소득의 합 -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td><td>자녀 1명당 50만원 * (총급여액등) 7,000만원 시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td></tr><tr><td>② 맞별이 가구 - 가구 요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소득 요건: 연간총소득 年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td><td>자녀 1명당 50만원 * (총급여액등) 7,000만원 시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시</td></tr></tbody></table> * 재산 1.7억원 초과 시 50% 감액 - 신청·지급 방법: 5월 신청, 9월 지급(연1회) ▪ 적용기한: 없음 【잠재적 관리대상】	신 청 자 격	지급액	① 홀별이 가구 - 가구 요건: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소득 요건: 연간총소득* 年 7,000만원 미만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교인소득의 합 -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원 * (총급여액등) 7,000만원 시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② 맞별이 가구 - 가구 요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소득 요건: 연간총소득 年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원 * (총급여액등) 7,000만원 시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시	계 8,917 소득세 (8,917)	계 8,342 소득세 (8,342)
신 청 자 격	지급액								
① 홀별이 가구 - 가구 요건: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소득 요건: 연간총소득* 年 7,000만원 미만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교인소득의 합 -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원 * (총급여액등) 7,000만원 시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② 맞별이 가구 - 가구 요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소득 요건: 연간총소득 年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원 * (총급여액등) 7,000만원 시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시								
근로 및 자녀장려 합계 (2)		55,284	53,812	53,896					

[13] 기타 직접국세(제11절)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재정금융 (010-014)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 도입목적: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 완화 ▪ 수혜자: 상시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 수혜내용: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1인당 200원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한도: 연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600만원) ▪ 적용기한: '28.12.31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 곤란 사유 - '27년부터 제도 적용		
2	재정금융 (010-014)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도입목적: 전자신고·전자고지 조기정착 및 활성화 유도 ▪ 수혜자: ①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②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 ▪ 수혜내용: ① (전자신고) 양도소득세(2만원), 소득세·법인세(1만원), 부가가치세(5천원) 세액공제 *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750만원 ② (전자고지)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 - '27년부터 종료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1,964 소득세 (1,453) 법인세 (28) 부가 가치세 (483)	계 1,517 소득세 (988) 법인세 (25) 부가 가치세 (504)	계 1,322 소득세 (958) 법인세 (13) 부가 가치세 (35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	재정금융 (010-014)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 도입목적: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 수혜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 수혜내용: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 손금산입 ▪ 적용기한: '27.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79 법인세 (279)	계 1,615 법인세 (1,615)	계 134 법인세 (134)
4	재정금융 (010-014)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 도입목적: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안정적인 초기 재원 확보 ▪ 수혜자: 신용회복목적회사 ▪ 수혜내용: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15년 후 잔액 일시 익금산입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51 법인세 (51)	계 69 법인세 (69)	계 94 법인세 (94)
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0-1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 도입목적: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 수혜자: 해외자원개발 투자·출자하는 기업 ▪ 수혜내용: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세액공제 ▪ 적용기한: '26.12.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05 소득세 (0.05) 법인세 (0)	계 0.04 소득세 (0.04) 법인세 (0)	계 0.04 소득세 (0.04) 법인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6	고등교육 (050-052)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 도입목적: 대학재정 건전화 유도 ▪ 수혜자: 학교법인 ▪ 수혜내용: ① 대학(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건축물·유가증권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 시,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② 학교법인이 50%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 시 손금산입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1 법인세 (1)	계 0.9 법인세 (0.9)	계 1 법인세 (1)
7	주택 (080-088)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 도입목적: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수혜자: 주택건설사업자 ▪ 수혜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미포함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은 당사자의 결정에 따르므로 추정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8	주택 (080-088)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 ▪ 도입목적: 통합으로 해산되는 양기관 (구)대한주택공사와 (구)한국토지공사)의 청산소득 법인세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 수혜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주주 등 ▪ 수혜내용: -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시 주주 등의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처분시 익금산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시 이익분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배제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9	체육 (060-063)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 도입목적: 직장운동 경기부(실업팀) 창단 적극 유도, 스포츠 경쟁력 강화 도모 ▪ 수혜자: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 (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 3년간 운영비 중 특정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장애인운동경기부) 5년간 운영비 중 특정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10 법인세 (10)	계 10 법인세 (10)	계 11 법인세 (1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0	고용 (080-08D)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 도입목적: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창출 고용을 국내고용으로 전환·유도, 국내 조기 정착 지원 ▪ 수혜자: 국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 수혜내용: 7년간 100% + 3년간 50% 세액감면 (수도권 내 부분복귀 시 3년간 100%+2년간 50%) ▪ 적용기한: '27.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9 소득세 (0) 법인세 (0.9)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3 소득세 (0) 법인세 (3)										
11	주택 (080-088)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 도입목적: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 수혜자: 정비사업의 시공자 등과 조합 등 ▪ 수혜내용: - (시공자 등)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시 해당금액 손금산입 - (조합 등) 채무면제이익을 증여 또는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음 ▪ 적용기한: '27.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9 법인세 (0.9)	계 0.4 법인세 (0.4)	계 0 법인세 (0)										
12	재정금융 (010-01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도입목적: 배당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 수혜자: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 ▪ 수혜내용: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14~30% 세율로 분리과세 <table> <tr> <th>특례배당소득</th> <th>세율</th> </tr> <tr> <td>2천만원 이하</td> <td>14%</td> </tr> <tr> <td>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td> <td>20%</td> </tr> <tr> <td>3억원 초과~50억원 이하</td> <td>25%</td> </tr> <tr> <td>50억원 초과</td> <td>30%</td> </tr> </table>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	신설	계 3,789 소득세 (3,789)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3	해운 및 항만 (120-124)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 도입목적: 국적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적선사 성장 지원 ▪ 수 혜 자: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 ▪ 수혜내용: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원양 해상 운송비용의 1% 추가 가능) 세액공제 * 공제한도: 소득·법인세의 10% 범위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 소득세 (0) 법인세 (2)	계 0.7 소득세 (0) 법인세 (0.7)	계 14 소득세 (0) 법인세 (14)
14	지역 및 도시 (140-14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도입목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배당활성화 ▪ 수 혜 자: 프로젝트금융투자법인(PFV) ▪ 수혜내용: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82 법인세 (282)	계 104 법인세 (104)	계 110 법인세 (110)
15	재정금융 (010-01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 도입목적: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 수 혜 자: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 ▪ 수혜내용: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 × 500원(최대 200만원)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5 소득세 (0.1) 법인세 (0.4)	계 0.9 소득세 (0.2) 법인세 (0.7)	계 0.9 소득세 (0.2) 법인세 (0.7)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6	물류 등 기타 (120-126)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 도입목적: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 수혜자: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 수혜내용: - 국내건설모회사가 '22.12.31.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이 회수기일 이후 5년이상 경과하고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으며,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 국내건설모회사가 '22.12.31.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한 대여금을 출자 전환한 후 5년이상 경과하고 손금산입일 이전 10년간 자본잠식인 경우 손금산입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규모를 사전 파악하기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17	교통 및 물류 (120-126)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4 ▪ 도입목적: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수혜자: 건설기계(1대에 한함)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한 사업자 ▪ 수혜내용: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 ($=① \times ② - 1,000\text{만원}$)을 3년 분할 산입 * ① 기존자산 양도가액 - 기존자산 장부가액 ②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8	체육 (060-063)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 ▪ 도입목적: 이스포츠대회 진흥 ▪ 수혜자: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10%를 개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6.12.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1 법인세 (0.1)	계 0.1 법인세 (0.1)
19	산업혁신 지원 (110-117)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 도입목적: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 수혜자: 한국산업은행 ▪ 수혜내용: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 시 출연금 손금산입 ▪ 적용기한: '28.12.31.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계 960 법인세 (960)
기타직접국세 합계 (19)			2,591	3,318	6,439

[14] 간접 국세(제3장)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철도 (120-122)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도입목적: 도시철도 건설·확대 촉진 유도 - 수혜자: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 - 수혜내용: 도시철도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3,642 부가 가치세 (3,642)	계 2,610 부가 가치세 (2,610)	추정 곤란
2 취약계층 지원 (080-082)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 도입목적: 보조기구단가를 인하하여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수혜자: 장애인 - 수혜내용: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의료기기법」,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특정 품목 - 적용기한: 없음 【잠재적 관리대상】	계 1,894 부가 가치세 (1,894)	계 2,038 부가 가치세 (2,038)	계 2,111 부가 가치세 (2,111)
3 농업 및 농촌 (100-101) 임업 및 산촌 (100-102) 수산 및 어촌 (100-103)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제6호 - 도입목적: 영농비용 절감 등을 통해 영세한 농업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수혜자: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종사자 - 수혜내용: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28.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21,914 부가 가치세 (21,914)	계 20,566 부가 가치세 (20,566)	계 21,304 부가 가치세 (21,304)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4	농업 및 농촌 (100-101) 임업 및 산촌 (100-102) 수산 및 어촌 (100-103)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도입목적: 농·임·수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 유도 ▪ 수혜자: 농·임·어업 종사자 ▪ 수혜내용: 기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외에 신규지원이 필요한 특정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 ▪ 적용기한: 없음 【잠재적 관리대상】	계 1,747 부가 가치세 (1,747)	계 1,358 부가 가치세 (1,358)	계 1,407 부가 가치세 (1,407)
5	물류 등 기타 (120-126)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 도입목적: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지구입비용 절감 ▪ 수혜자: 개인택시 운수사업자 ▪ 수혜내용: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 구매시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 ▪ 적용기한: '27.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783 부가 가치세 (783)	계 652 부가 가치세 (652)	계 675 부가 가치세 (675)
6	수산 및 어촌 (100-103)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 도입목적: 전력용 면세유류를 통해 생활용수 부족이 심각한 도서지방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 ▪ 수혜자: 도서지방 거주자 ▪ 수혜내용: 전기 공급이 곤란한 도서지방 자가발전 사용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면제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0 부가 가치세 (5) 교통세 (13) 교육세 (2)	계 19 부가 가치세 (6) 교통세 (11) 교육세 (2)	계 2 부가 가치세 (0.5) 교통세 (1) 교육세 (0.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7	교육일반 (050-054)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 도입목적: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급식의 저렴한 제공 유도 ▪ 수혜자: 공장·건설사업 현장 근로자 및 학생 등 ▪ 수혜내용: 공장, 학교, 광산, 건설현장,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장의 급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9.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		
8	농업 및 농촌 (100-101)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 도입목적: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업법인의 부담 경감을 통해 경영수지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수혜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수혜내용: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		
9	주택 (080-088)	국민주택 및 동 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도입목적: 국민주택 건설 및 취득 지원 ▪ 수혜자: 국민주택 취득자 및 건설업자 등 ▪ 수혜내용: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0	주택 (080-088)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 ▪ 도입목적: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주민에게 주거비 안정을 지원 ▪ 수혜자: 공동주택 거주자 등 ▪ 수혜내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8. 12. 31. * 국민주택의 경우 일몰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		
11	노인 (080-08B)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4 ▪ 도입목적: 노인복지주택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 수혜자: 노인복지주택 거주자 ▪ 수혜내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		
12	주택 (080-088)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5 ▪ 도입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 ▪ 수혜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수혜내용: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070-079)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 도입목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수혜자: 온실가스 배출권 등 거래한 자 ▪ 수혜내용: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등록한 것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637 부가 가치세 (637)	계 1,721 부가 가치세 (1,721)	계 1,783 부가 가치세 (1,783)
14	주택 (080-088)	BTO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 도입목적: 민간자본 유치로 사립대학 기숙사 개선 ▪ 수혜자: 사립대학 재학생 등 ▪ 수혜내용: BTO 방식으로 건설하는 기숙사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 제1항 8호, 8호의2: '14. 12. 31.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적용 - 제1항 8호의3: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57 부가 가치세 (57)	계 58 부가 가치세 (58)	계 66 부가 가치세 (66)
15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070-079)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2 ▪ 도입목적: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심 내 운행빈도가 높은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전기 또는 수소전기차량으로 교체 ▪ 수혜자: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등 ▪ 수혜내용: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 농어촌버스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076 부가 가치세 (2,076)	계 2,817 부가 가치세 (2,817)	계 729 부가 가치세 (729)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6	보건의료 (090-091)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 도입목적: 필수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 희귀질환 환자 치료 기회 등 제공 ▪ 수혜자: 희귀병 환자 ▪ 수혜내용: 고서병 등 희귀병환자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		
17	아동보육 (080-08A)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 ▪ 도입목적: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지원 강화 ▪ 수혜자: 영유아를 보육하는 자 ▪ 수혜내용: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 분유 포함)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		
18	임업 및 산촌 (100-102)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 도입목적: 초기 수요창출을 통한 농·산촌 지역의 연료대체 유도 ▪ 수혜자: 목재펠릿 이용자 ▪ 수혜내용: 목재펠릿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6.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4 부가 가치세 (4)	계 4 부가 가치세 (4)	계 1 부가 가치세 (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9	노인 (080-08B)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3호 ▪ 도입목적: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지원 ▪ 수혜자: 주택연금 가입자, 한국주택금융공사 ▪ 수혜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신탁받은 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잠재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규모의 합리적 추정이 어려움		
20	농업 및 농촌 (100-101)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 ▪ 도입목적: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산물 안정적 공급에 기여 ▪ 수혜자: 농·어민 ▪ 수혜내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8.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24 부가 가치세 (24)	계 52 부가 가치세 (52)	계 54 부가 가치세 (54)
21	농업 및 농촌 (100-101) 임업 및 산촌 (100-102) 수산 및 어촌 (100-103)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도입목적: 농·임·어업 생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에 기여 ▪ 수혜자: 농민, 임업인, 어민 ▪ 수혜내용: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면제 ▪ 적용기한: '29.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10,259 부가 가치세 (3,076) 개별 소비세 (253) 교통세 (5,993) 교육세 (937)	계 11,433 부가 가치세 (3,221) 개별 소비세 (265) 교통세 (6,938) 교육세 (1,009)	계 11,668 부가 가치세 (3,337) 개별 소비세 (266) 교통세 (7,028) 교육세 (1,037)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2	해운 및 항만 (120-124)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 도입목적: 적정운임 유지로 도서민을 포함한 여객선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운항원가 상승 억제로 연안여객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 수혜자: 도서지방 거주자 등 ▪ 수혜내용: 연안운항여객선박 사용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408 부가 가치세 (130) 개별 소비세 (7) 교통세 (235) 교육세 (36)	계 453 부가 가치세 (168) 개별 소비세 (8) 교통세 (241) 교육세 (36)	계 38 부가 가치세 (14) 개별 소비세 (0.7) 교통세 (20) 교육세 (3)
23	물류 등 기타 (120-12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 도입목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 ▪ 수혜자: 회사택시 기사 등 ▪ 수혜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4% 경감 ▪ 적용기한: '29.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271 부가 가치세 (2,271)	계 2,449 부가 가치세 (2,449)	계 2,472 부가 가치세 (2,472)
24	관광 (060-062)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 도입목적: 관광객 유치 지원 ▪ 수혜자: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 관광객 ▪ 수혜내용: 숙박용역 공급확인서 제출 시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적용기한: '27. 6. 30. 【적극적 관리대상】	계 19 부가 가치세 (19)	계 23 부가 가치세 (23)	계 18 부가 가치세 (18)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5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070-07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도입목적: 세부담을 경감하여 폐자원 등의 수집활동 지원 ▪ 수혜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 ▪ 수혜내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①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3/103 ②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의 10/110 ▪ 적용기한: '28.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18,203 부가 가치세 (18,203)	계 21,305 부가 가치세 (21,305)	계 21,873 부가 가치세 (21,873)
26	산업혁신 지원 (110-117)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1항 ▪ 도입목적: 연료소비를 절감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대기오염 물질·온실가스 배출 저감 ▪ 수혜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 수혜내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100% 감면(1대당 한도: 70만원)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814 개별 소비세 (2,164) 교육세 (650)	계 1,982 개별 소비세 (1,525) 교육세 (457)	계 500 개별 소비세 (383) 교육세 (117)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7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070-079)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 도입목적: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자동차 기술력 확보 ▪ 수혜자: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 수혜내용: 전기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감면(1대당 한도: (~'26년) 300만원 ('27년) 200만원 ('28년) 100만원)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3,288 개별 소비세 (2,529) 교육세 (759)	계 5,820 개별 소비세 (4,477) 교육세 (1,343)	계 4,768 개별 소비세 (3,627) 교육세 (1,141)
28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070-079)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7항 ▪ 도입목적: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 수혜자: 수소전기 자동차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 수혜내용: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감면(1대당 한도: (~'26년) 400만원, ('27년) 300만원 ('28년) 150만원)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116 개별 소비세 (89) 교육세 (27)	계 203 개별 소비세 (156) 교육세 (47)	계 204 개별 소비세 (156) 교육세 (48)
29	외교통상 (030-032)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 도입목적: 외교관례, 상호주의 등 감안 ▪ 수혜자: 외국 외교관, 외국 민간 원조단체 ▪ 수혜내용: 국산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1 개별 소비세 (1) 교육세 (0.4)	계 1 개별 소비세 (1) 교육세 (0.3)	계 1 개별 소비세 (1) 교육세 (0.3)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0	산업혁신 지원 (110-117)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도입목적: 에너지 절감,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 ▪ 수혜자: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합)차 운전자 ▪ 수혜내용: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부탄: 전액 ** 감면한도: 연 30만원 ▪ 적용기한: '29.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579 개별 소비세 (579)	계 564 개별 소비세 (564)	계 567 개별 소비세 (567)
31	물류 등 기타 (120-126)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 도입목적: 택시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에 따른 경영난 해소와 택시운송 종사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 ▪ 수혜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수혜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 (LPG)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 감면 ▪ 적용기한: '29.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408 개별 소비세 (355) 교육세 (53)	계 389 개별 소비세 (338) 교육세 (51)	계 392 개별 소비세 (340) 교육세 (52)
32	외교통상 (030-032)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4 ▪ 도입목적: 외교관례, 상호주의 등 감안 ▪ 수혜자: 외국 외교관 등 ▪ 수혜내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환급 또는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9 개별 소비세 (9)	계 9 개별 소비세 (9)	계 9 개별 소비세 (9)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3	해운 및 항만 (120-124)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 도입목적: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유종을 전환(중유→경유)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한시완화 ▪ 수혜자: 연안화물선 운전자 ▪ 수혜내용: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56원/ℓ 감면 *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에 한함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34 교통세 (30) 교육세 (4)	계 40 교통세 (35) 교육세 (5)	계 4 교통세 (3) 교육세 (0.5)
34	전력유지 (040-042)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 도입목적: 군 장병의 복지향상 및 사기증진 ▪ 수혜자: 군인·군무원 등 ▪ 수혜내용: 군 직영매점에서 판매하는 국내 제조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등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188 개별 소비세 (0) 주세 (145) 교육세 (43)	계 173 개별 소비세 (0) 주세 (133) 교육세 (40)	계 176 개별 소비세 (0) 주세 (135) 교육세 (41)
35	관광 (060-062)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 도입목적: 외화 획득 및 외국군인 사기양양, 해당 지역 사회문제 방지 ▪ 수혜자: 주한외국군인 등 ▪ 수혜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1 주세 (0.9) 교육세 (0.3)	계 1 주세 (1) 교육세 (0.3)	계 1 주세 (1) 교육세 (0.4)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6	산업혁신 지원 (110-117)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 도입목적: K-주류 제품의 개발 및 관련 농업·식품 산업 지원 ▪ 수혜자: 주류업계 및 농·식품 산업 ▪ 수혜내용: '26.4.1.부터 '28.12.31.까지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율 30% 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	신설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적용대상 규모를 사전 파악하기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37	농업 및 농촌 (100-101) 임업 및 산촌 (100-102) 수산 및 어촌 (100-103)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 도입목적: 영세한 농업인의 생산비 및 가계비 안정 및 실질적 소득보전 ▪ 수혜자: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조합원 등 ▪ 수혜내용: 다음에 대해 인지세 면제 ① 소비대차증서(융자한도: 1억원) ② 예금·적금증서·통장 ③ 농어촌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④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 ⑤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87 인지세 (87)	계 87 인지세 (87)	계 0 인지세 (0)
38	창업 및 벤처 (110-118)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 ▪ 도입목적: 초기 창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창업 활성화 ▪ 수혜자: 창업중소기업 ▪ 수혜내용: 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융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또는 감면(중소기업: 면제, 금융기관 50% 감면)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작성하는 서류 한정 ▪ 적용기한: '29.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732 인지세 (732)	계 767 인지세 (767)	계 392 인지세 (392)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9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4호 ▪ 도입목적: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거래비용을 낮춰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유도 ▪ 수혜자: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등 ▪ 수혜내용: 다음의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①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시 (제1호)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시 (제2호) ③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시 (제2호의2) ④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이 코넥스 상장 이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시 (제2호의4) ⑤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시 (제4호)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23 증권 거래세 (223)	계 4,258 증권 거래세 (4,258)	계 4,327 증권 거래세 (4,327)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40	산업혁신 지원 (110-117)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5호, 제3호, 제5호 ▪ 도입목적: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효율화·안정화 지원 ▪ 수혜자: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참여자 ▪ 수혜내용: 다음의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①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 양도 시 (제2호의5 가목) ② 개별 주식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 양도 시 (제2호의5 나목) ③ 주식시장조성을 위한 주식 양도 시 (제3호) ④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의 차익 거래를 위한 주식 양도 시 (제5호) ▪ 적용기한 - 수혜내용 ①, ②, ③의 경우: '28. 12. 31. - 수혜내용 ④의 경우: '29.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285 증권 거래세 (285)	계 2,267 증권 거래세 (2,267)	계 2,304 증권 거래세 (2,304)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41	산업혁신 지원 (110-117)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제7의2호, 제7의3호, 제8호, 제9호, 제14호, 제16호, 제19호, 제19의2호, 제19의3호, 제21~24호 ▪ 도입목적: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 지원 등 ▪ 수혜내용·수혜자: 다음의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① 부실금융기관 등이 보유주권을 적기 시정조치에 따라 양도 (제7호) ②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우려조합의 주권을 양수 후 양도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 ③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권양도 (제8호, 제9호) ④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양도 (제14호) ⑤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 간 교환 (제16호) ⑥ 부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주권양도 (제19호, 제19호의2, 제19호의3) ⑦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종지수 반영을 위한 주권 양도 (제21호) ⑧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서 현물출자 받은 주권을 자회사에 양도 (제22호) ⑨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제23호) ⑩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교환 (제24호) ▪ 적용기한: - ⑤의 경우: '28. 12. 31. - ⑨, ⑩의 경우: '29. 12. 31. - 그 외의 경우: 없음 【잠재적 관리대상】	계 774 증권 거래세 (774)	계 536 증권 거래세 (536)	계 545 증권 거래세 (545)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42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0-115)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경감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 도입목적: 국내 보급률 조기 달성 및 신재생 에너지설비의 국산화율 제고, 업계의 글로벌 원가 경쟁력 강화 ▪ 수혜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또는 전력 계통 연계조건 개선기기 제조업체 ▪ 수혜내용: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이용기자재 또는 전력 계통 연계조건 개선 기자재에 대해 관세 50% 경감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2 관세 (0.2)	계 0.1 관세 (0.1)	계 0 관세 (0)
43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 도입목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 수혜자: 국내 복귀 기업 ▪ 수혜내용: 국내에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 적용기한: '27.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7 관세 (7)	계 0 관세 (0)	계 0 관세 (0)
간접국세 합계 (43)			73,504	84,655	78,391

[15] 외국인 투자 [제5장]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무역 및 투자유치 (110-113)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도입목적: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여 고용창출, 선진기술 도입, 구조조정 원활화 - 수혜자: 외국인투자기업 - 수혜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 수반 사업 등을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48 관세 (12) 부가가치세 (36) 개별소비세 (0) 교육세 (0)	계 74 관세 (11) 부가가치세 (63) 개별소비세 (0) 교육세 (0)	계 75 관세 (10) 부가가치세 (65) 개별소비세 (0) 교육세 (0)
외국인투자 합계 (1)			48	74	75

[16]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제5장의2]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산업혁신 지원 (110-11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 도입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첨단과학 관련 산업 육성 - 수혜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수혜내용: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8 소득세 (0.06) 법인세 (0.8)	계 0.2 소득세 (0) 법인세 (0.2)	계 0.3 소득세 (0) 법인세 (0.3)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	산업혁신 지원 (110-117)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 도입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개방거점 개발 ▪ 수혜자: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사업시행자 ▪ 수혜내용: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②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의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적용기한: ①의 경우 '28.12.31. ②의 경우 일몰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3	관광 (060-062)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 도입목적: 제주도 접근비용을 인하하여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 도모 ▪ 수혜자: 제주도 여행객 및 지정면세점 ▪ 수혜내용: 제주도 내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 밖으로 휴대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개별소비세·주세 등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1,544 부가 가치세 (507) 개별 소비세 (101) 주세 (720) 교육세 (216)	계 2,531 부가 가치세 (1,461) 개별 소비세 (101) 주세 (745) 교육세 (224)	계 2,602 부가 가치세 (1,513) 개별 소비세 (102) 주세 (757) 교육세 (230)
제주국제도시육성 합계 (3)			1,545	2,531	2,602

[17] 기업도시(제5장의3)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산업혁신 지원 (110-1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 도입목적: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 수혜자: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 수혜내용: ①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② (사업시행자)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적용기한: ①의 경우 '28. 12. 31. ②의 경우 일몰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57 소득세 (0) 법인세 (57)	계 19 소득세 (0) 법인세 (19)	계 20 소득세 (0) 법인세 (20)
기업도시 합계 (1)			57	19	20

[18] 지역발전 [제5장의4 ~ 6]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문화예술 (060-06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 도입목적: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내 투자진흥지구내 국내·외 민자 유치 및 투자 활성화 ▪ 수혜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 수혜내용: 해당 지구에서 영위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3 소득세 (0) 법인세 (0.3)	계 0.3 소득세 (0) 법인세 (0.3)	계 0.3 소득세 (0) 법인세 (0.3)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	재정금융 (010-01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 도입목적: 금융중심지로 국내·외국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을 유도하여 우리나라를 아시아 금융허브국가로 육성 ▪ 수혜자: 금융중심지 내 창업·신설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 ▪ 수혜내용: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3	보건의료 (090-091)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 도입목적: 첨단 의료산업 및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해외 우수 기업 유치 ▪ 수혜자: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 수혜내용: 해당 지역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식품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4 소득세 (0) 법인세 (4)	계 3 소득세 (0) 법인세 (3)	계 3 소득세 (0) 법인세 (3)
지역발전 합계 (3)			4	3	3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 (제5장의7)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농업 및 농촌 (100-10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 도입목적: 농협 구조조정 지원 ▪ 수혜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혜내용: ①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제1항, 제3항) 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제6항) ③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제9항) ④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이 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항) ▪ 적용기한: - 수혜내용 ①의 경우: '17. 12. 31. - 수혜내용 ④의 경우: '26. 12. 31. - 수혜내용 ②, ③의 경우: 없음 【잠재적 관리대상】	계 799 법인세 (24) 부가 가치세 (775)	계 837 법인세 (22) 부가 가치세 (815)	계 815 법인세 (23) 부가 가치세 (792)
농협 구조개편 합계 (1)			799	837	815

[20] 공적자금 회수 (제5장의8)

○ 해당사항 없음

[2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제5장의9)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수산 및 어촌 (100-10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제4항, 제7항, 제8항 ▪ 도입목적: 수협 구조조정 지원 ▪ 수혜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수혜내용: 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과세특례(제4항) ②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제7항) ②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제8항) ▪ 적용기한: - 수혜내용 ①, ②의 경우: 없음 - 수혜내용 ③의 경우: '26.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82 법인세 (1) 부가가치세 (81)	계 102 법인세 (0.9) 부가가치세 (101)	계 85 법인세 (1) 부가가치세 (84)
		수협 구조개편 합계 (1)	82	102	85

[22] 사업재편 계획 (제5장의10)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산업혁신 지원 (110-117)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 도입목적: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 수혜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상환자금으로 충당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6.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	산업혁신 지원 (110-11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 도입목적: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 수혜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회사 등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모회사, 자회사, 주주 ▪ 수혜내용: 모회사는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주주는 증여세 비과세 ▪ 적용기한: '26.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증여세 (0)	계 0 법인세 (0) 증여세 (0)	계 0 법인세 (0) 증여세 (0)
3	산업혁신 지원 (110-117)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 도입목적: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 수혜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 또는 자산양도대금을 증여한 주주 및 수증법인 ▪ 수혜내용: - 수증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제1항) - 증여한 법인 주주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손금산입(제2항) - 자산양도대금을 증여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3항) ▪ 적용기한: '29.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4	산업혁신 지원 (110-11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 도입목적: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 수혜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및 금융기관 ▪ 수혜내용: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제1항), 해당 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 금액을 손금산입(제3항) ▪ 적용기한: '26.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5	산업혁신 지원 (110-117)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 도입목적: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 수혜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6.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6	산업혁신 지원 (110-117)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 도입목적: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 수혜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후 합병등기일 1년 이내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 ▪ 수혜내용: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6. 12. 31. 【잠재적 관리대상】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사업재편 계획 합계 (6)			0	0	0

[23] 기회발전특구 지원(제5장의11)

(단위: 억 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산업혁신 지원 (110-117)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 도입목적: 국가균형발전,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 수혜자: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수혜내용: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01 소득세 (0.01)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2	산업혁신 지원 (110-117)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 도입목적: 국가균형발전,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 수혜자: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기업(거주자·내국법인) ▪ 수혜내용: 3년이상(중소기업은 2년) 사업영위를 하고,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3	산업혁신 지원 (110-117)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 도입목적: 국가균형발전,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 수혜자: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한 투자자 ▪ 수혜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10년간 9%세율로 분리과세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기회발전특구 지원 합계 (3)			0	0	0

[24] 통합특별시 지원(제5장의12)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지역 및 도시 (140-1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6 ▪ 도입목적: 행정통합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 수혜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수혜내용: 특구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9.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특구 지정 및 특구 내 창업기업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25] 기타 (제6장)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교육일반 (050-054) 보건의료 (090-091) 사회복지 일반 (080-089)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도입목적: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 및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납세자의 협력을 유도 ▪ 수혜자: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수혜내용: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지출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6.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377 소득세 (377)	계 405 소득세 (405)	계 437 소득세 (437)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	재정 금융 (010-01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도입목적: 과세표준 양성화 및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 ▪ 수혜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수혜내용: 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기간, 결제수단,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 <table><thead><tr><th>구분</th><th>공제율</th></tr></thead><tbody><tr><td>신용카드</td><td>15%</td></tr><tr><td>현금영수증 등</td><td>30%</td></tr><tr><td>문화체육사용분*</td><td>30%</td></tr><tr><td>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tbody></table>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체육시설사용료는 25.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급여수준 및 자녀수에 따라 250~4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대해 200~300만원 추가) - (카드사용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자 - (공제적용금액) 재화·용역 구입액 *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등	30%	문화체육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계 43,243 소득세 (43,243)	계 41,360 소득세 (41,360)	계 48,292 소득세 (48,292)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등	30%														
문화체육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	재정금융 (010-014)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도입목적: 과세표준 양성화 ▪ 수혜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및 사업자 ▪ 수혜내용: ①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②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해 발급건수에 따라 소득세 세액공제 ▪ 적용기한: ① 적용기한 없음 ② ~'28.12.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513 소득세 (88) 부가 가치세 (425)	계 486 소득세 (49) 부가 가치세 (437)	계 506 소득세 (53) 부가 가치세 (453)
4	재정금융 (010-01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도입목적: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과 책임 있는 세무대리 관행의 정착 ▪ 수혜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수혜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소득세 120만원, 법인세 150만원 한도)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2,708 소득세 (2,561) 법인세 (147)	계 2,817 소득세 (2,633) 법인세 (184)	계 3,030 소득세 (2,836) 법인세 (194)
5	재정금융 (010-014)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 도입목적: 금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금 거래 양성화 지원 ▪ 수혜자: 금지금 공급자, 사업자 등 ▪ 수혜내용: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매입세액 공제 허용, 관세 면제 등 ▪ 적용기한: (관세) '29. 12. 31. * 소득세, 법인세 공제는 '19.12.31. 적용종료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매입세액공제 허용 등의 경우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850 소득세 (0) 법인세 (0) 부가 가치세 (0) 관세 (850)	계 1,330 소득세 (0) 법인세 (0) 부가 가치세 (0) 관세 (1,330)	계 1,276 소득세 (0) 법인세 (0) 부가 가치세 (0) 관세 (1,276)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6	문화예술 (060-061)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전통시장 지출분 손금산입 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제6항 ▪ 도입목적: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 지원 육성 및 전통시장 지원 강화 ▪ 수 혜 자: 문화비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내국인, 전통시장에서 지출 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내국인 ▪ 수혜내용: - 문화비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손금산입 - 전통시장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손금산입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8 소득세 (0) 법인세 (8.02)	계 15 소득세 (0) 법인세 (15)	계 16 소득세 (0) 법인세 (16)
7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0-115)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도입목적: 국내의 석유개발 기술 및 자본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기업, 특히 해외 석유개발 회사의 유치를 통해 국내 대륙붕 해저광물자원 개발 활성화 제고 ▪ 수 혜 자: 해저광물 탐사·채취를 위해 기계·장비·자재를 수입하는 해저조광권자 등 ▪ 수혜내용: 부가가치세·관세 등 면제 ▪ 적용기한: '28. 12. 31. 【적극적 관리대상】	계 6 부가 가치세 (4) 관세 (2)	계 0 부가 가치세 (0) 관세 (0)	계 0 부가 가치세 (0) 관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8	물류 등 기타 (120-126)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 도입목적: 보세구역 물류시설을 통해 공급되는 장비 등을 이용하는 국내기업 지원 ▪ 수혜자: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구역 또는 자유 무역지역 소재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하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 수혜내용: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506 소득세 (0) 법인세 (506)	계 798 소득세 (0) 법인세 (798)	계 839 소득세 (0) 법인세 (839)
		기타 합계 (8)	48,211	47,211	54,396

2.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근거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 도입목적: 합성니코틴 신규 과세에 따른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부담 경감 ▪ 수혜자: 합성니코틴 담배 사업자 및 소비자 ▪ 수혜내용: 개별소비세 50% 감면 ▪ 적용기한: '28. 4. 23.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간접국세 【적극적 관리대상】	-	신설	계 956 개별 소비세 (956)
2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0-115)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 근거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19조의2 제3호 ▪ 도입목적: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생활 향상 ▪ 수혜자: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 및 이용자 ▪ 수혜내용: ① 내국인: 1명 1회 입장에 개별소비세 6,300원(일반 카지노는 5만원) ② 외국인·해외이주자: 면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지역균형발전 【적극적 관리대상】	계 1,392 개별 소비세 (1,071) 교육세 (321)	계 1,362 개별 소비세 (1,048) 교육세 (314)	계 1,376 개별 소비세 (1,053) 교육세 (323)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	사회복지 일반 (080-089)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도입목적: 장애인 및 환자수송, 여객운송업, 다자녀가구 지원 ▪ 수혜자: 장애인, 병원, 택시사업자, 렌터카사업자, 기업연구소, 다자녀가구 ▪ 수혜내용: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잠재적 관리대상】	계 4,233 개별 소비세 (3,256) 교육세 (977)	계 4,279 개별 소비세 (3,291) 교육세 (988)	계 4,321 개별 소비세 (3,307) 교육세 (1,014)
4	체육 (060-063)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제1호, 제2호 ▪ 도입목적: 학생 골프선수 및 프로 골프선수 육성 지원 ▪ 수혜자: 우수학생 골프선수, 프로골프선수 ▪ 수혜내용: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간접국세 【적극적 관리대상】	계 28 개별 소비세 (22) 교육세 (6)	계 40 개별 소비세 (31) 교육세 (9)	계 41 개별 소비세 (31) 교육세 (10)
5	관광 (060-062)	주한 미군 등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면제 ▪ 근거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3 ▪ 도입목적: 외화 획득 및 외국군인 사기양양, 기지촌 주변 사회문제 방지 ▪ 수혜자: 주한 국제연합군 및 미군 ▪ 수혜내용: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간접국세 【적극적 관리대상】	계 0 개별 소비세 (0) 교육세 (0)	계 0 개별 소비세 (0) 교육세 (0)	계 0 개별 소비세 (0) 교육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6	산업혁신 지원 (110-117)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근거규정: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 도입목적: 기업의 기술혁신(R&D) 활동을 지원 ▪ 수혜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수요업체 ▪ 수혜내용: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80% 관세 감면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연구개발 【적극적 관리대상】	계 95 관세 (95)	계 137 관세 (137)	계 0 관세 (0)
7	취약계층 지원 (080-082)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 근거규정: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 ▪ 도입목적: 장애인 부담 경감 및 장애인 의료 재활서비스의 효과적 공급 도모 ▪ 수혜자: 장애인 ▪ 수혜내용: 장애인을 위한 의료용구 등 수입 시 관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잠재적 관리대상】	계 277 관세 (277)	계 289 관세 (289)	계 277 관세 (277)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8	산업혁신 지원 (110-117)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근거규정: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 도입목적: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첨단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 ▪ 수혜자: 공장자동화 물품 수요업체 ▪ 수혜내용: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 감면율: ① 중소제조업체: 30% (‘26. 12. 31. 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 ② 중견제조업체: ‘26. 12. 31. 까지 수입 신고하는 경우 30%)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타 【적극적 관리대상】	계 34 관세 (34)	계 29 관세 (29)	계 28 관세 (28)
9	사회복지 일반 (080-089)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법인세법 제24조 ▪ 도입목적: GDP 대비 기부금총액 비율 2.0% 달성 등 나눔문화 활성화 ▪ 수혜자: 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관련 단체 및 기부 법인 ▪ 수혜내용: ①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② 일반기부금: 소득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사회적기업은 20%)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잠재적 관리대상】	계 8,343 법인세 (8,343)	계 8,571 법인세 (8,571)	계 9,013 법인세 (9,013)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0	사회복지 일반 (080-089)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 도입목적: 영세민 및 군인·의무경찰 등에 대한 특별 지원 ▪ 수혜자: 군인, 의무경찰 등 ▪ 수혜내용: 소액담배 및 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6. 12. 31.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적극적 관리대상】	계 16 부가 가치세 (16)	계 0 부가 가치세 (0)	계 0 부가 가치세 (0)
11	교육일반 (050-054)	교육·과학·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호 ▪ 도입목적: 과학·교육·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재원 마련 ▪ 수혜자: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문화단체 등 ▪ 수혜내용: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간접국세 【적극적 관리대상】	계 550 부가 가치세 (550)	계 946 부가 가치세 (946)	계 980 부가 가치세 (98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2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 (110-116)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도입목적: 사업자의 부담 경감																					
	▪ 수혜자: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 창출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수혜내용: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 창출한 재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면세농산물 등 가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 개인음식점(2억 이하) 공제율 특례 적용		계	계	계																	
	<table><tr><th colspan="2">업종</th><th>공제율</th></tr><tr><td rowspan="2">음식점(개인)</td><td>4억이하</td><td>9/109 (‘28년말까지)</td></tr><tr><td>4억초과</td><td>8/108</td></tr><tr><td colspan="2">음식점(법인)</td><td>6/106</td></tr><tr><td colspan="2">제조업(개인,중소기업)</td><td>4/104</td></tr><tr><td colspan="2">과세유흥장소, 기타</td><td>2/102</td></tr></table>		업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이하	9/109 (‘28년말까지)	4억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개인,중소기업)		4/104	과세유흥장소, 기타		2/102	35,874	37,209	38,544
	업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이하	9/109 (‘28년말까지)																			
		4억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개인,중소기업)		4/104																			
과세유흥장소, 기타		2/102																				
		부가	부가	부가																		
		가치세	가치세	가치세																		
		(35,874)	(37,209)	(38,544)																		
- 공제한도 특례 적용																						
<table><tr><th>구분</th><th>과세표준 (연간기준)</th><th>기본 (‘25년말까지)</th><th>음식점업 (‘25년말까지)</th></tr><tr><td rowspan="3">개인 사업자</td><td>1억원이하</td><td rowspan="3">과세 표준의 65%</td><td>과세표준의 75%</td></tr><tr><td>1~2억원</td><td>70%</td></tr><tr><td>2억원초과</td><td>60%</td></tr><tr><td colspan="2">법인사업자</td><td colspan="2">50%</td></tr></table>		구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25년말까지)	음식점업 (‘25년말까지)	개인 사업자	1억원이하	과세 표준의 65%	과세표준의 75%	1~2억원	70%	2억원초과	60%	법인사업자		50%						
구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25년말까지)	음식점업 (‘25년말까지)																			
개인 사업자	1억원이하	과세 표준의 65%	과세표준의 75%																			
	1~2억원		70%																			
	2억원초과		60%																			
법인사업자		50%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간접국세																						
【잠재적 관리대상】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3	재정금융 (010-01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도입목적: 지속적인 과세표준 양성화 및 자영업자들의 협력 유도 ▪ 수혜자: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수혜내용: 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0%('26.12.31.까지 1.3%, '27.1.1~'29.12.31까지 1.2%) 납부세액 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26.12.31.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31,080 부가 가치세 (31,080)	계 34,935 부가 가치세 (34,935)	계 32,633 부가 가치세 (32,633)
14	농업 및 농촌 (100-101)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목 ▪ 도입목적: 고령·은퇴 농민의 소득을 보전, 농지 임차인 부담 경감 및 농산물 공급 안정 ▪ 수혜자: 전답을 임대하는 거주자 ▪ 수혜내용: 작물을 생산하는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계 99 소득세 (99)	계 152 소득세 (152)	계 163 소득세 (163)
15	농업 및 농촌 (100-10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사목 ▪ 도입목적: 농가의 소득안정 기반 구축 ▪ 수혜자: 농·어민 ▪ 수혜내용: 농가부업소득 및 전통주의 제조, 어로어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 적용기한: 없음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대부분의 농·어민이 비과세 적용을 받아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므로 농가부업 소득 자료수집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6	노동 (080-08E)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 도입목적: 해외진출 활성화 촉진, 해외현장의 우리나라 근로자 비중 제고를 통한 외화가득률 증대 ▪ 수혜자: 국외근로 소득자 ▪ 수혜내용: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 한도: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국외항행 선박 및 항공기·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500만원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적극적 관리대상】	계 2,091 소득세 (2,091)	계 2,080 소득세 (2,080)	계 2,288 소득세 (2,288)
17	건강보험 (090-09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 도입목적: 비용성격 지출에 대한 소득 보전 ▪ 수혜자: 근로소득자 ▪ 수혜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타직접국세 【구조적 지출】	계 33,654 소득세 (33,654)	계 34,102 소득세 (34,102)	계 36,322 소득세 (36,322)
18	노동 (080-08E)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 도입목적: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직 업종의 인력난 개선 ▪ 수혜자: 생산직 근로자 ▪ 수혜내용: 연장·야간·휴일 근무로 인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도 240만원)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적극적 관리대상】	계 254 소득세 (254)	계 210 소득세 (210)	계 231 소득세 (23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9	고등교육 (050-052)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로 지급받는 장학금 비과세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서목 ▪ 도입목적: 비과세인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 ▪ 수혜자: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 수혜내용: 근로장학금 비과세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연구개발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비과세 소득에 대한 감면 세액 계산이 불가하여 세액 증감분 추정 곤란		
20	지식재산 일반 (110-11A)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 도입목적: 직무발명 활성화 ▪ 수혜자: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종업원, 대학 교직원 등 ▪ 수혜내용: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한도 700만원)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연구개발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비과세 소득에 대한 감면 세액 계산이 불가하여 세액 증감분 추정 곤란		
21	보훈 (080-087)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과 보로금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나목 ▪ 도입목적: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 수혜자: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 수혜내용: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과 보로금에 대해 비과세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타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비과세 기타소득의 종류별 구분이 불가하여 통계자료 추출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2	보훈 (080-087)	상훈법상 훈장에 부속한 부상 또는 각종 상금 등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 도입목적: 국가 등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보상 ▪ 수혜자: 훈장 수여자 및 노벨상 등 일정수준 이상 수상자 ▪ 수혜내용: 상금과 부상에 대해 비과세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타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비과세 기타소득의 종류별 구분이 불가하여 통계자료 추출 곤란		
23	문화재 (060-064)	국가지정문화재 및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바목,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사목 ▪ 도입목적: 문화재 보존 및 관리 ▪ 수혜자: 국가지정문화재 및 서화·골동품 양도자 ▪ 수혜내용: 국가지정문화재를 양도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타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비과세 기타소득의 종류별 구분이 불가하여 통계자료 추출 곤란		
24	노동 (080-08E)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과세특례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소득세법 제63조 ▪ 도입목적: 사적 상호부조를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수혜자: 직장공제회 가입자 ▪ 수혜내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고, 세액계산 특례 적용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적극적 관리대상】	계 1,199 소득세 (1,199)	계 1,313 소득세 (1,313)	계 1,444 소득세 (1,444)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5	사회복지 일반 (080-089)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비영리단체가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 도입목적: 공익활동 지원 ▪ 수혜자: 비영리단체 ▪ 수혜내용: 비영리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공익사업지원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상 별도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조세지출효과 산정 불가		
26	재정금융 (010-014)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도입목적: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장기저축 장려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 수혜자: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자 등 ▪ 수혜내용: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 한도 - 일시납 보험: 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 월 적립식 보험: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저축지원 【적극적 관리대상】	계 4,586 소득세 (4,586)	계 6,105 소득세 (6,105)	계 6,489 소득세 (6,489)
27	노인 (080-08B)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도입목적: 부양에 따른 비용증가 보전 ▪ 수혜자: 가족 중 경로우대자가 있는 거주자 ▪ 수혜내용: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구조적 지출】	계 6,442 소득세 (6,442)	계 6,998 소득세 (6,998)	계 7,633 소득세 (7,633)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8	취약계층 지원 (080-082)	장애인 추가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도입목적: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비용증가 보전 ▪ 수혜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거주자 ▪ 수혜내용: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구조적 지출】	계 4,670 소득세 (4,670)	계 4,974 소득세 (4,974)	계 5,429 소득세 (5,429)
29	여성· 가족· 청소년 (080-08C)	부녀자 추가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 도입목적: 주부의 취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 비용 등을 보전 ▪ 수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수혜내용: 연 50만원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구조적 지출】	계 841 소득세 (841)	계 995 소득세 (995)	계 1,081 소득세 (1,081)
30	여성· 가족· 청소년 (080-08C)	한부모 추가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6호 ▪ 도입목적: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수혜자: 거주자 ▪ 수혜내용: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구조적 지출】	계 126 소득세 (126)	계 158 소득세 (158)	계 172 소득세 (172)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1	공적연금 (080-083)	연금보험료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1조의3 ▪ 도입목적: 기여금 납부에 따른 부담 완화, 연금 소득 과세에 따른 과세이연 ▪ 수 혜 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 ▪ 수혜내용: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구조적 지출】	계 47,581 소득세 (47,581)	계 51,745 소득세 (51,745)	계 56,499 소득세 (56,499)
32	노인 (080-08B)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1조의4 ▪ 도입목적: 거주주택을 담보로 장기연금대출을 이용하는 서민 고령층의 이자부담 경감,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활성화 ▪ 수 혜 자: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는 거주자 ▪ 수혜내용: 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도 200만원)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적극적 관리대상】	계 0.5 소득세 (0.5)	계 0.7 소득세 (0.7)	계 0.7 소득세 (0.7)
33	노동 (080-08E)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4~6항 ▪ 도입목적: 중산층 또는 서민층의 주택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수 혜 자: 세대주인 근로자 ▪ 수혜내용: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상환방식에 따라 연 800만원 또는 2,000만원·1,800만원·600만원 한도)을 근로소득 특별공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적극적 관리대상】	계 14,362 소득세 (14,362)	계 15,551 소득세 (15,551)	계 17,016 소득세 (17,016)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4	채정금융 (010-014)	기장세액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6조의2 ▪ 도입목적: 소규모 사업자의 추계신고를 축소하고 장부기장을 유도하여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수확보 기여 ▪ 수혜자: 간편장부 대상자 중 복식부기 사업자 ▪ 수혜내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였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세액 공제(한도 100만원)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중소기업 【적극적 관리대상】	계 1,176 소득세 (1,176)	계 1,208 소득세 (1,208)	계 1,301 소득세 (1,301)
35	여성·가족·청소년 (080-08C)	자녀세액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 도입목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산 장려 ▪ 수혜자: 거주자 ▪ 수혜내용: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①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세액공제 ② 해당연도 출생한 직계비속, 입양 신고한 입양자 1명당 세액공제 *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구조적 지출】	계 8,620 소득세 (8,620)	계 13,436 소득세 (13,436)	계 11,965 소득세 (11,965)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6	사회복지 일반 (080-089)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3 ▪ 도입목적: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장려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 수혜자: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 수혜내용: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연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연 900만원)+ 만기 ISA전환금(MIN(전환액10%, 3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5%)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잠재적 관리대상】	계 20,654 소득세 (20,654)	계 25,751 소득세 (25,751)	계 28,010 소득세 (28,010)
37	보건의료 (090-09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9조의4 제1항 ▪ 도입목적: 비용성격 지출에 대한 소득 보전 ▪ 수혜자: 근로자 ▪ 수혜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보장성보험으로 생명·상해·손해보험, 군인·교원·경찰·수협 등 공제회의 공제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구조적 지출】	계 72,530 소득세 (72,530)	계 80,170 소득세 (80,170)	계 87,591 소득세 (87,59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8	보건의료 (090-09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도입목적: 비용성격 지출에 대한 소득 보전 ▪ 수혜자: 근로자 ▪ 수혜내용: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6세 이하인 사람·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 없음)에 대해 15% 세액공제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등 치료비 20%)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잠재적 관리대상】	계 15,721 소득세 (15,721)	계 17,375 소득세 (17,375)	계 18,999 소득세 (18,999)
39	교육일반 (050-05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도입목적: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 구현 ▪ 수혜자: 근로자(학자금 대출자 포함) ▪ 수혜내용: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15% 세액공제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적용 * 체험학습비 (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공제한도 - (근로자 본인·장애인)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취학 전, 초·중·고: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잠재적 관리대상】	계 9,368 소득세 (9,368)	계 9,411 소득세 (9,411)	계 11,107 소득세 (11,107)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40	사회복지 일반 (080-089)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도입목적: 개인 기부 활성화 ▪ 수혜자: 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관련단체 및 기부자 ▪ 수혜내용: 아래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1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30%, 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40%) 세액공제 ① 특례기부금: 한도 없음 ②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10%+Min[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 ③ 일반기부금(기타): 소득금액×30% ▪ 적용기한: 없음 *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 40% 공제의 경우 '24.12.31. 까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잠재적 관리대상】	계 14,074 소득세 (14,074)	계 14,926 소득세 (14,926)	계 16,309 소득세 (16,309)
41	재정금융 (010-01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19조의3, 법인세법 제93조의3 ▪ 도입목적: 국채 등에 대한 수요기반 확대 지원 ▪ 수혜자: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 ▪ 수혜내용: 국채·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이자· 양도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저축지원 【적극적 관리대상】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제출서식 상 비거주자· 외국법인별 비과세금액 산출이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42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110-119)	가업상속공제 ▪ 근거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도입목적: 기업경영이념의 일관성 유지와 기술적 발전을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 유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 수혜자: 가업상속자 ▪ 수혜내용: 피상속인이 10년 이상('27.7.1. 이후 상속 개시분은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상속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 10 ~ 20년 경영: 300억원 - 20 ~ 30년 경영: 400억원 -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 '27.7.1. 이후 상속 개시분: 피상속인 경영연수 x 20억원(최대 1,000억원)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중소기업 【적극적 관리대상】	계 5,410 상속세 (5,410)	계 3,042 상속세 (3,042)	계 3,518 상속세 (3,518)
43	농업 및 농촌 (100-101)	영농상속공제 ▪ 근거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 도입목적: 농업분야의 원활한 가업승계 도모, 우수한 후계인력의 확보를 통한 농업의 지속성 유지 ▪ 수혜자: 영농상속자 ▪ 수혜내용: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지원을 위해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30억원 한도)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적극적 관리대상】	계 2,297 상속세 (2,297)	계 1,829 상속세 (1,829)	계 2,114 상속세 (2,114)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44	재정금융 (010-014)	금융재산 상속공제 ▪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도입목적: 시가가 불분명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낮은 시가와와 불균형 시정 ▪ 수혜자: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 수혜내용: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최대 2억원 한도)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적극적 관리대상】	계 5,571 상속세 (5,571)	계 2,632 상속세 (2,632)	계 3,043 상속세 (3,043)
45	재정금융 (010-014)	동거주택 상속공제 ▪ 근거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도입목적: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의 문제점을 보완 ▪ 수혜자: 피상속인과 동거한 무주택 소유 상속자 ▪ 수혜내용: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가 상속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6억원 한도)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적극적 관리대상】	계 2,869 상속세 (2,869)	계 2,106 상속세 (2,106)	계 2,435 상속세 (2,435)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46	취약계층 지원 (080-08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 도입목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자녀를 둔 부모가 사고나 노환으로 사망 시 제3자의 편법 상속을 방지하고 자녀가 안전하게 재산권을 상속할 수 있도록 보호 ▪ 수혜자: 장애인, 장애아동 등 수증자 ▪ 수혜내용: 장애인 등이 자익신탁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 또는 타익신탁에 따라 증여받는 수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한도: 5억원/ '27.1.1. 이후 증여받는 분 부터 10억원)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적극적 관리대상】	계 20 증여세 (20)	계 12 증여세 (12)	계 27 증여세 (27)
47	채정금융 (010-014)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 근거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도입목적: 자진신고 유도 ▪ 수혜자: 상속·증여세 납부의무자 ▪ 수혜내용: 납부의무자가 일정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타직접국세 【적극적 관리대상】	계 3,636 상속세 (2,412) 증여세 (1,224)	계 4,745 상속세 (2,687) 증여세 (2,058)	계 5,377 상속세 (3,106) 증여세 (2,271)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합계 (47)			359,776	388,821	414,735

3. 경과규정 항목별 세부내역

* 적용기한은 종료되었으나 경과규정 등에 따라 운용 중에 있는 항목

(단위: 억원)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	산업혁신 지원 (110-117)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도입목적: 기업이 경기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 ▪ 수혜자: 내국인 ▪ 수혜내용: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 한도) ▪ 적용기한: '13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연구개발	계 0.06 소득세 (0) 법인세 (0.06)	계 0.04 소득세 (0) 법인세 (0.04)	계 0.07 소득세 (0) 법인세 (0.07)
2	창업 및 벤처 (110-118)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 도입목적: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확충 지원 ▪ 수혜자: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등에 신규출자 등 방식으로 출자한 법인 ▪ 수혜내용: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등에 ❶설립 자본금 납입, ❷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 ❸잉여금 자본전입, ❹채무의 자본전환 방식으로 출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5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연구개발	계 0.01 법인세 (0.01)	계 0 법인세 (0)	계 0 법인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	산업혁신 지원 (110-11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도입목적: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제고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수혜자: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 수혜내용: - 기본공제: 투자금액의 0%~3% - 추가공제: 투자금액의 3%~8% (한도: 고용증가인원×1인당 1~2천5백만원) ▪ 적용기한: '17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투자촉진	계 53 소득세 (0) 법인세 (53)	계 36 소득세 (0) 법인세 (36)	계 38 소득세 (0) 법인세 (38)
4	산업혁신 지원 (110-117)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 도입목적: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원의 인프라펀드를 운영하여 민관 역할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수혜자: 공모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자 ▪ 수혜내용: 뉴딜인프라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 적용기한: '22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투자촉진	계 0.02 소득세 (0.02)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5	산업혁신 지원 (110-117)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도입목적: 서비스업 설비투자 지원 ▪ 수혜자: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설비투자 자산의 취득가액이 2년 연속 증가한 내국인 ▪ 수혜내용: 취득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 적용기한: '15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투자촉진	계 396 소득세 (0) 법인세 (396)	계 353 소득세 (0) 법인세 (353)	계 265 소득세 (0) 법인세 (265)
6	산업혁신 지원 (110-117)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 ▪ 도입목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확대 유도 ▪ 수혜자: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취득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 적용기한: '24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투자촉진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제출서식 상 손금산입 금액 산출이 곤란		
7	고용 (080-08D)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 도입목적: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 ▪ 수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수혜내용: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고용지원	계 0.2 소득세 (0) 법인세 (0.2)	계 0.1 소득세 (0) 법인세 (0.1)	계 0.1 소득세 (0) 법인세 (0.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8	고용 (080-08D)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 도입목적: 청년고용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수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 수혜내용: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당 300만원* 세액공제 ▪ * 중소기업: 1천만원 / 중견기업: 700만원 ▪ 적용기한: '17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고용지원	계 52 소득세 (8) 법인세 (44)	계 33 소득세 (8) 법인세 (25)	계 34 소득세 (8) 법인세 (26)
9	무역 및 투자유치 (110-11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 도입목적: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수혜자: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 ▪ 수혜내용: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외국법인 신설 시 또는 기존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해당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1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업구조조정	계 3 법인세 (3)	계 2 법인세 (2)	계 0 법인세 (0)
10	산업혁신 지원 (110-117)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 도입목적: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혜택 부여 ▪ 수혜자: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 ▪ 수혜내용: '99.12.31. 이전에 취득한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5년 후 양도 시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50% 공제) ▪ 적용기한: '99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업구조조정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1	문화예술 (060-061)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 도입목적: 문화시설 이전 지원 ▪ 수혜자: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등이 이전을 위해 종전 시설을 양도하는 거주자 ▪ 수혜내용: 양도소득세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신규시설 개관일 2년 내에 종전시설 양도 ▪ 적용기한: '22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공익사업 지원	계 0.06 소득세 (0.06)	계 0.03 소득세 (0.03)	계 0.01 소득세 (0.01)
12	임업 및 산촌 (100-102)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 도입목적: 국유림 조성 지원 ▪ 수혜자: 거주자 ▪ 수혜내용: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세액감면 ▪ 적용기한: '22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공익사업지원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13	사회복지 일반 (080-089)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 ▪ 도입목적: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저축 장려 ▪ 수혜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20세 이상의 거주자 ▪ 수혜내용: 불입액의 40% 소득공제(72만원 한도) ▪ 적용기한: '00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저축지원	계 153 소득세 (153)	계 148 소득세 (148)	계 161 소득세 (161)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4	사회복지 일반 (080-089)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 도입목적: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저축 장려 ▪ 수 혜 자: 개인연금저축가입 20세 이상 거주자 ▪ 수혜내용: 연금지급 시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12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저축지원	계 322 소득세 (322)	계 467 소득세 (467)	계 497 소득세 (497)
15	재정금융 (010-014)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 도입목적: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 지원 ▪ 수 혜 자: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유자 ▪ 수혜내용: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12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저축지원	계 40 소득세 (40)	계 44 소득세 (44)	계 47 소득세 (47)
16	재정금융 (010-014)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도입목적: 저축률 제고 및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부여를 통한 사회형평성 제고 ▪ 수 혜 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 ▪ 수혜내용: 이자·배당소득 9% 저율과세 ▪ 적용기한: '14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저축지원	계 135 소득세 (135)	계 174 소득세 (174)	계 188 소득세 (188)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17	재정금융 (010-014)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 도입목적: 고수익·고위험채권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수혜자: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의 투자자 ▪ 수혜내용: 이자·배당소득 5% 저율·분리과세(1인당 투자금액 1억원 이하) ▪ 적용기한: '09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저축지원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18	재정금융 (010-0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 도입목적: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 수혜자: 재형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거주자 ▪ 수혜내용: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기별 납입금 300만원 이내) ▪ 적용기한: '15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저축지원	계 130 소득세 (130)	계 116 소득세 (116)	계 124 소득세 (124)
19	재정금융 (010-014)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 도입목적: 기업 자금조달 부담 및 시장 변동성 완화 ▪ 수혜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거주자 ▪ 수혜내용: 이자소득·배당소득 분리과세 ▪ * 투자금액 합계액 3천만원 한도 ▪ 적용기한: '24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저축지원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제출서식 상 조세지출 금액 산출이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0	재정금융 (010-01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 도입목적: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 수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수혜내용: 가입 후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15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저축지원	계 21 소득세 (21)	계 8 소득세 (8)	계 8 소득세 (8)
21	재정금융 (010-01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 도입목적: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 수혜자: 장기펀드 가입 청년층 * ①만19~34세, ②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납입금액(연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적용기한: '25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저축지원	계 2 소득세 (2)	계 8 소득세 (8)	계 9 소득세 (9)
22	재정금융 (010-014)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 도입목적: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수혜자: 청년도약계좌 개설 청년층 * ①만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 수혜내용: 계좌(연840만원 납입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25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저축지원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3	주택 (080-088)	장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97조의2 ▪ 도입목적: 국민주택 임대 활성화 ▪ 수혜자: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50% 감면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100% 감면) ▪ 적용기한: '00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계 253 소득세 (253)	계 259 소득세 (259)	계 282 소득세 (282)
24	주택 (080-088)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도입목적: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유도 ▪ 수혜자: 거주자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수혜내용 -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취득하고, 5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과밀억제권역은 60%)를 세액감면 - 5년이 지난 후 양도 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밀억제권역은 60%)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적용기한: '10.2월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계 0.8 소득세 (0.8)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5	주택 (080-088)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 도입목적: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유도 ▪ 수혜자: 거주자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수혜내용 : - '10.2.11. 현재 수도권 밖 지방의 미분양 주택 (‘11.4.30.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table> <tr> <th>분양가 인하 수준</th> <th>양도세 감면율</th> </tr> <tr> <td>가격인하 없음 ~ 10% 이하</td> <td>60%</td> </tr> <tr> <td>10% 초과 ~ 20% 이하</td> <td>80%</td> </tr> <tr> <td>20% 초과</td> <td>100%</td> </tr> </table> - 다주택자는 동 감면을 적용받는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 적용 ▪ 적용기한: '11.4월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분양가 인하 수준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없음 ~ 10% 이하	60%	10% 초과 ~ 20% 이하	80%	20% 초과	100%	계 0.06 소득세 (0.06)	계 0.08 소득세 (0.08)	계 0.09 소득세 (0.09)
분양가 인하 수준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없음 ~ 10% 이하	60%												
10% 초과 ~ 20% 이하	80%												
20% 초과	100%												
26	주택 (080-08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도입목적: 신축주택 취득 장려 ▪ 수혜자: 신축주택 취득자 ▪ 수혜내용: 아래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①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98.5.22부터 '99.6.30. (국민주택은 '99.12.31.)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② '98.5.22.부터 '99.6.30.(국민주택은 '99.12.31.)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적용기한: '99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계 8 소득세 (8)	계 24 소득세 (24)	계 26 소득세 (26)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27	주택 (080-088)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 도입목적: 1세대 1주택 하우스푸어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 ▪ 수혜자: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취득한 자 ▪ 수혜내용 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공제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적용기한: '03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계 23 소득세 (23)	계 110 소득세 (110)	계 119 소득세 (119)
28	주택 (080-08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도입목적: 지방 신축주택 취득 장려 ▪ 수혜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신축주택 취득자 ▪ 수혜내용: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적용기한: '03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계 13 소득세 (13)	계 3 소득세 (3)	계 3 소득세 (3)
29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 (110-116)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 도입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 수혜자: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수혜내용: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한도 2억) ▪ 적용기한: '20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계 0.01 소득세 (0) 법인세 (0.01)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0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 (110-116)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 도입목적: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기업들의 선결제분에 대한 세제지원 ▪ 수혜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수혜내용: 선결제액의 1%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20.12.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한 재화·용역의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1.~7.31. 중 1회 결제당 100만원 이상 결제할 것 ▪ 적용기한: '20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국민생활안정	계 0.01 소득세 (0) 법인세 (0.01)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계 0 소득세 (0) 법인세 (0)
31	해운 및 항만 (120-12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 도입목적: 물류전문기업 육성 및 제3자 물류 활성화로 물류산업 합리화 ▪ 수혜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수혜내용: ① 직전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② 당해연도 제3자 물류비중이 30% 초과 시 그 초과분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단, 직전연도의 제3자 물류비중이 30% 미만) ▪ 적용기한: '20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타직접국세	계 0.9 소득세 (0) 법인세 (0.9)	계 0.5 소득세 (0) 법인세 (0.5)	계 0.5 소득세 (0) 법인세 (0.5)
32	고등교육 (050-052)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 도입목적: 산업체가 현장 중심 인력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 ▪ 수혜자: 대학맞춤형 교육비용을 지급하고 연구인력개발 시설을 기부하는 내국인 ▪ 수혜내용: 교육비용·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맞춤형 교육비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등이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하는 조특법 제10조 준용 ② (기부금) 내국인이 학교에 연구·인력개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설비투자의 1%~7%를 세액공제하는 조특법 제25조 준용 ▪ 적용기한: '19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타직접국세	계 0.2 소득세 (0.2) 법인세 (0)	계 0.1 소득세 (0.1) 법인세 (0)	계 0.2 소득세 (0.2) 법인세 (0)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3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0-11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 도입목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유가안정 유도 ▪ 수혜자: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전자 결제망을 이용하는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 수혜내용: 공급가액의 3/1000 상당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적용기한: '25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타직접국세	계 10 소득세 (0.2) 법인세 (10)	계 7 소득세 (0.1) 법인세 (7)	계 7 소득세 (0.1) 법인세 (7)
34	재정금융 (010-014)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도입목적: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수혜자: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 ▪ 수혜내용: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9% 저율과세 또는 5% 세액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2천만원 한도) ▪ 적용기한: '17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타직접국세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계 0 소득세 (0)
35	물류 등 기타 (120-126)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3 ▪ 도입목적: 개인택시 사업자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구입비용 경감 ▪ 수혜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수혜내용: 개인택시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4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간접 국세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 추정곤란 사유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6	관광 (060-06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 도입목적: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세표준 양성화 ▪ 수혜자: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 관광객 ▪ 수혜내용: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제출 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적용기한: '25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간접 국세	계 1,752 부가 가치세 (1,752)	계 1,324 부가 가치세 (1,324)	계 0 부가 가치세 (0)
37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070-079)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 도입목적: 노후차 교체 촉진 ▪ 수혜자: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소비자 ▪ 수혜내용: 노후차 폐차 또는 수출 후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액 70% 감면(한도 100만원) ▪ 적용기한: '25. 6. 30.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간접 국세	계 194 개별 소비세 (149) 교육세 (45)	계 0 개별 소비세 (0) 교육세 (0)	계 0 개별 소비세 (0) 교육세 (0)
38	무역 및 투자유치 (110-113)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4 ▪ 도입목적: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여 고용창출, 선진기술 도입, 구조조정 원활화 ▪ 수혜자: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 ▪ 수혜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각종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7년간(5년 100%, 2년 50%) 또는 5년간(3년 100%, 2년 50%) 세액감면 - 한도금액: 투자금액기준에 의한 금액(외국인 투자누계액의 50%한도) + 고용기준에 의한 금액*(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한도) *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①) × 2천만원] + [①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수(②) × 1천500만원] + [①,②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적용기한: '18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외국인투자	계 484 소득세 (2) 법인세 (482)	계 257 소득세 (1) 법인세 (256)	계 270 소득세 (1) 법인세 (269)

	예산분류	조세지출 내역	25실적	26전망	27전망
39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0-115)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 도입목적: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하도록 하여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탈루하는 것 방지 ▪ 수혜자: 금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한 금 또는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 ▪ 수혜내용: ①, ② 중 하나를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①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가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② 수입금액의 5%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 적용기한: '23년 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타	계 0.5 소득세 (0.2) 법인세 (0.3)	계 2.2 소득세 (0.2) 법인세 (2)	계 2.2 소득세 (0.2) 법인세 (2)
경과규정에 따른 조세지출 합계 (39)			4,050	3,376	2,083